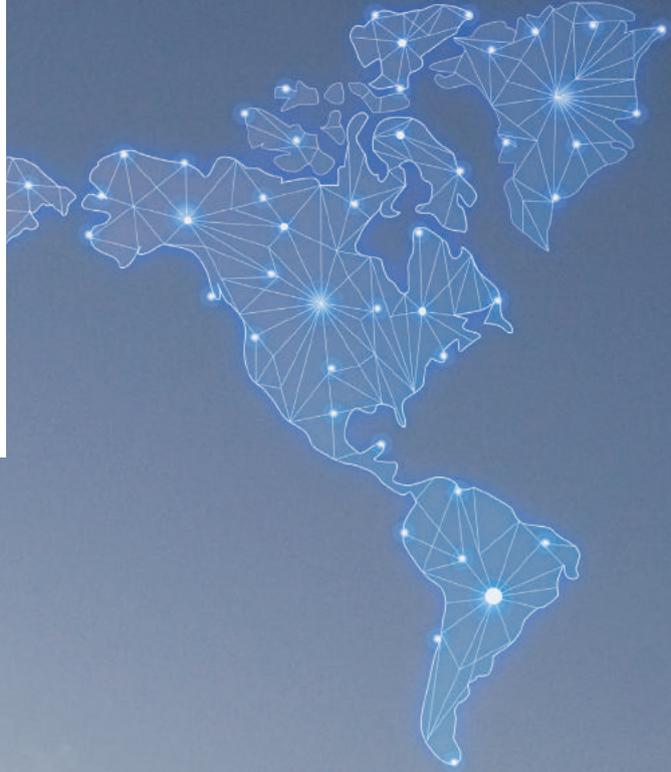


November 2023

Vol. 04 (통권 44호)

FTA 무역리포트

FTA TRADE REPORT



FTA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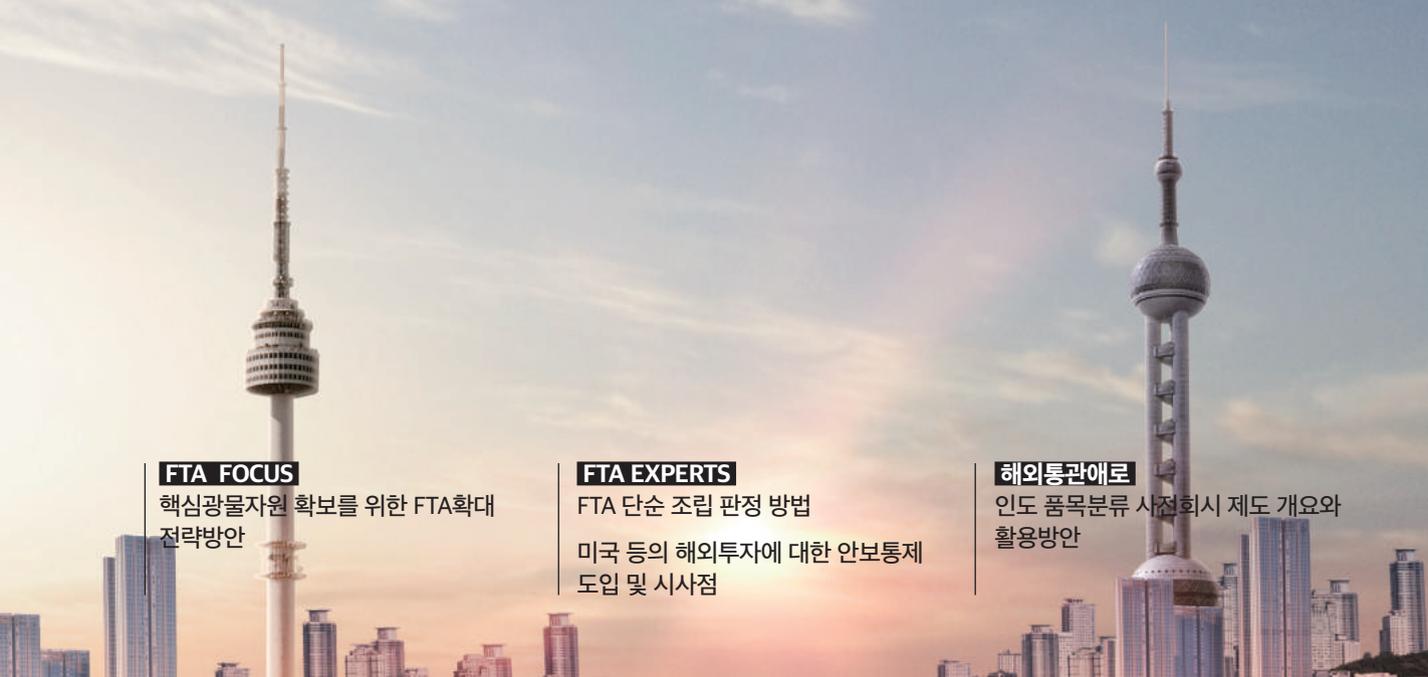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FTA확대 전략방안

FTA EXPERTS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미국 등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해외통관애로

인도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개요와 활용방안



November 2023

Vol. 04 (통권 44호)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Contents

FTA FOCUS

006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FTA 확대 전략방안

엄광열 | (재)영월산업진흥원 원장·한국관세학회 고문
경제학 박사

FTA 동향

018

FTA TOON

043

FTA EXPERTS

046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김대훈 |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미국 등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고준성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FTA ANALYSIS

066

한국의 EODES 구축(시) 효과 추정

윤호성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팀장

FTA 품목분류

074

통칙 제3호를 적용한 WCO HS 위원회

품목분류 사례해설

오수교 | KPMG 관세법인 관세사

쉬어가기

087



해외통관애로

090

인도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개요와 활용방안

최영훈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FTA 100% 활용하기

098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12

전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태윤희 | 태관세사무소 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22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RCEP 원산지국가 결정하기 -

구분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32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위험요소 극복방안

이재현 | 더현관세사무소 관세사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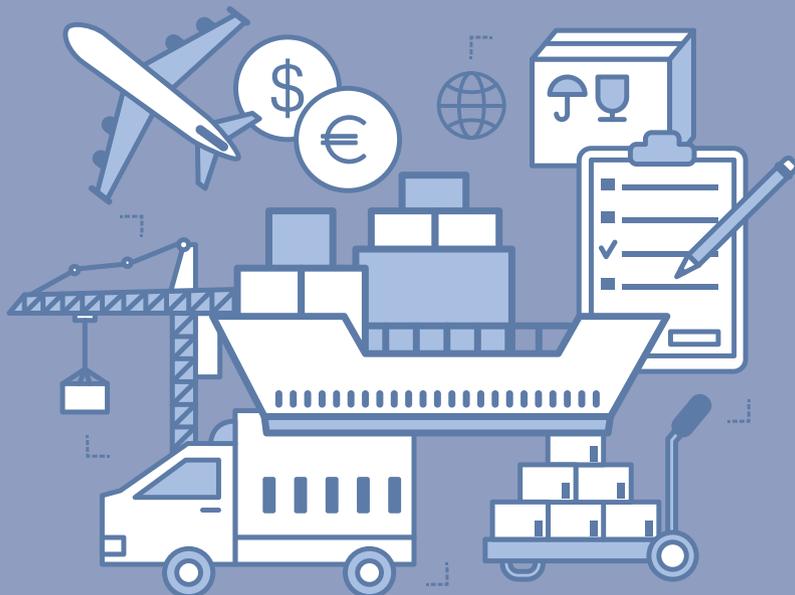
146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ETA TRAD



FTA REPORT



FTA FOCUS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FTA 확대 전략방안

엄광열 | (재)영월산업진흥원 원장·한국관세학회 고문·경제학 박사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FTA 확대 전략방안



엄광열

(재)영월산업진흥원 원장
한국관세학회 고문
경제학 박사

1 글로벌 자원전쟁! 시대 흐름 맞는 산업통상정책 패러다임 요구

최근 대외적으로 기후온난화 리스크, 미·중간 패권경쟁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밀착외교, 한·미·일 안보강화,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에너지자원의 무기화와 식량 안보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세계경제가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글로벌 경제침체가 국내산업의

침체로 전이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로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경제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디커플링 정책¹의 고수로 갈등관계가 악화되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EU, 일본, 인도 등 우방국도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 몰입하는 추세다.

1 디커플링은 국가와 국가, 또는 한 국가와 세계의 경기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이다. 한 나라,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국가마다 위기해법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국의 실리를 전제로 한 보호무역강화의 움직임이 핵심 키워드다.

실례로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리스크가 자원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광물자원이 빈약한 국가는 원료 공급이 어려워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등 첨단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新 보호무역 주의 확산으로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은 높아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생존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각지의 공급망에 산업을 연계해 다변화된 시장을 확보하고 유연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핵심전략에 FTA(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2004년)가 체결된 이후 현재 22개 협정을 통해 전 세계 59개국(2023년 9월 기준)과 FTA를 발효시키고 있다.

자원보국 등 잠재력이 주목받는 국가와 EPA(경제동반자협정)²,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³ TIPF(무역투자촉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간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산업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면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원전쟁이라는 격렬한 갈등 속에 세계가 양 진영으로 분리되어 경제블록화 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의 공급망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리의 경우 칠레·페루, 니켈의 경우 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 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리튬의 경우 호주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이 선두이다.

중국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단시간에 공급망 재편의 돌파구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의 대안으로 핵심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FTA 확대전략과 실리를 기반으로 한 대안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2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면서도, 상대국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통상협정이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케냐·탄자니아·모로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태국, 파키스탄, 동유럽 중남미의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3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2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핵심광물자원 확보의 필요성

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등장

글로벌 공급망 위기등장 요인으로 우선, 미국 등 자유진영내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들 수 있다. 脫중국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EU 등 자국중심주의가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이 출범(2022. 6.14.)하였다.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EU,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국가 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구체화하고 있다.

둘째, 脫중국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유진영내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 확보는 안보 구축이라는 인식하에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2022년 8월)	핵심 원자재법 추진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광물 원산지 규정 도입하여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배제 의지 표현 • 북미 경제 불려내 공급망 구축 구체화 : • 북미 지역 광산정보 공유, 공동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중심 독자 공급망 구축 추진 예상 (유럽판 IRA) • 유럽내 광물 생산 역량 확대 • 유럽내 폐배터리 재활용순환경제 투자확대·부품

마지막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급증(핵심광물 의존형으로 산업구조가 전환중)과 특정국 편재성, 자원무기화 확산 등으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 확산, 국가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확보전략이 증대되기 때문에 위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의 필요성

우선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원을 민족 주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흑연 통제, 호주·칠레·아르헨티나의 리튬,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콩고민주 공화국의 코발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핵심광물은 자원 주권을 내세우며 광물자원 수출을 더욱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희소금속의 경우 99.7% 수입 의존하고 있기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소금속 확보가 절실하다.

둘째, 핵심광물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온쇼어링(onshoring)⁴이나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워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이차전지, 탄소중립, 4차 산업 등 첨단산업 프레임 변화에 따라 희소금속(REE, Li, Co, V, W, Sn, Ni, Mo 등)의 수요급증에 대비한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필수 희소금속의 자립 확보가 필요하다. 에너지 저장산업, 반도체·Display, 전기차·자율주행차, 우주항공, 드론, IOT 가전, 로봇, 3D 프린팅 등에 적용된다.

넷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부품소재 원료인 희소금속(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장비관련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소재 관련 원료광물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협력 및 확보된 자원의 자립생산 기술개발 시급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글로벌 탄소중립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패러다임은 친환경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은 핵심광물 산업구조로 전환되어 지역 편재에 의한 자원무기화 및 자원보호 정책으로 공급 불확실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4 온쇼어링(Onshoring)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 현황과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원빈국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하며, 그중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금액 기준)는 니켈 99.4%, 흑연 93.1%, 코발트 73.7%, 리튬 63.2%이다. 핵심광물 자원 개발률은 2014년까지는 24.9%였으나 2021년에는 0.2%까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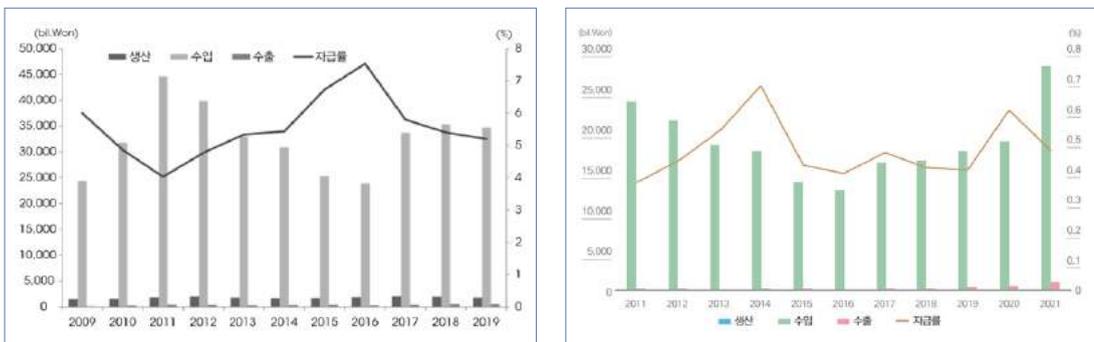
우리나라 광물자원 전체 연간 수입액은 40조, 수출액은 800조원에 이른다. 자급률은 0.4% 이하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및 4차 산업 분야의 기술발전과는 다르게 이들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료 자원의 확보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⁵⁾의 정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둘째,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 (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그림 1] 우리나라 광산물 수급분석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산물 수급분석 2019, 2021/2022.

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 2.27.

또한,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 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하며 긴급 상황 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 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민간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

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다섯째, 광물자원은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의 지정, 관리 및 비축,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3 핵심광물자원 확보 대응전략

가. 핵심광물자원확보를 위한 FTA 등 다각화 전략의 필요성

광물자원 경제부국이 자국 시장 중심의 폐쇄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는 유연하고 다변화된 수출구조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FTA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동,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와 자원통상연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자·다자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자원외교)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양자협력은 개발 매력도와 접근 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30개 광물자원 보유 국가⁶와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여 전략협력국을 선정하여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FTA 신규·개정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강화 내용(공동연구, 정보 교류, 무역원활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다자간 협력은 광물안보파트너십(MSP)⁷, 국제에너지기구(IEA)⁸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때 ESG 요소(재무투명성, 지속가능성 수명주기 평가, 공급망 추적 이니셔티브 등)를 고려한 유망프로젝트 선정하여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 국내 핵심광물자원 특례지위 부여와 광물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1989년) 이후 폐광 지역(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경북 문경, 전남 화순, 충남 보령)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진행되어 지역경제가 무너진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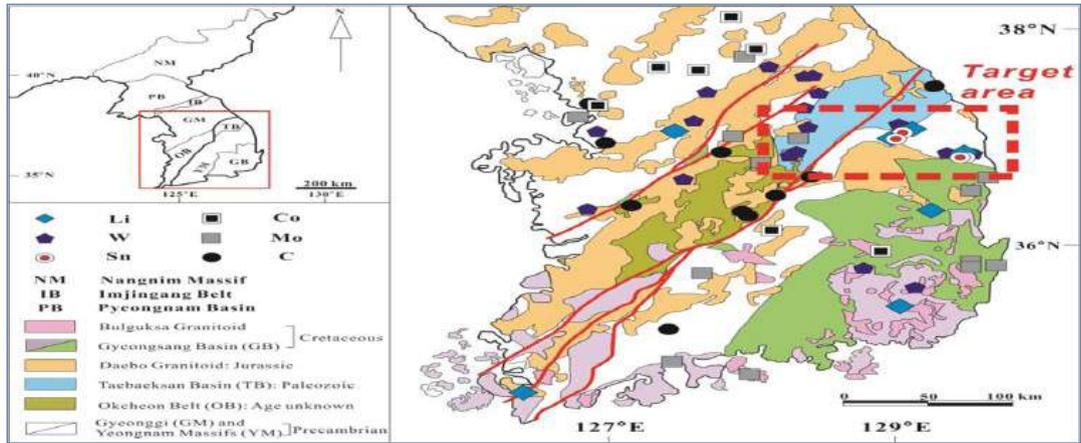
한때 텅스텐(중석)으로 19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60%를 차지했던 강원 영월군은 과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텅스텐 광산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했다. 이는 해외광물 자원확보가

6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2023.2. 참조

7 MSP(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는 20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하여 13개국 참여하여 참여국간 프로젝트 정보공유, 투자네트워크, ESG 규범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의 4대 중점사항 추진하고 있다.

8 IEA(국제 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호주 주도 25개국 참여하여 핵심광물 작업반(CMWP)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그림 2] 우리나라 중부내륙지역 희유금속자원 분포도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표자료 재편집.

아닌 국내 핵심광물자원을 발굴 지원하여 첨단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핵심광물자원 특례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현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육성정책인 “脫중국”이 가능하며, 항공우주, 반도체 강국에 필수적인 텅스텐을 100% 국내에서 조달하여 자원주권 확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영월-정선-태백-삼척-홍천-제천-울진 등 중부내륙지역은 우리나라 희유금속자원 보고(寶庫)이다. 영월(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흑연), 태백(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몰리), 정선(몰리, 바나듐, 텅스텐), 제천(몰리, 텅스텐), 울진(리튬, 텅스텐, 주석, 바나듐)은 자원이 풍부하다. 중부지역 및 해외개발 희소금속 연구개발하는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R&D+고부가가치 소재개발=영월, 가공처리=태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 개발도상국가와 ODA 활용전략과 북방권역과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개도국의 수요와 양국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ODA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금망 분야에서는 핵심 원자재 및 희소금속 보유국을 중심으로 첨단소재 상용화

ODA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의 우리나라 도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바이오 현대화 등 탄소중립 ODA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북방 국가와 에너지협력이 필요하다. 러시아 등 북방권역은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광물자원 등 에너지원 수요가 많고 첨단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북방권역의 희소금속 부존 현황(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한 상생 모델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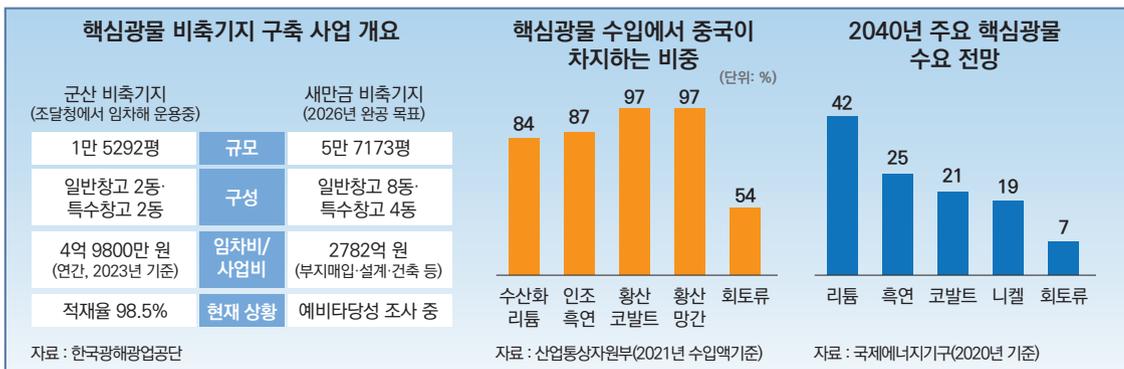
라. 국내 광물자원비축기지 확대 조성의 필요성

국내 광물자원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⁹으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대상 광물을 마그네슘 등 26종 4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60일분, 희소금속은 100일분까지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수요 변화로 발생하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남해안권 중심의 비축기지 조성을 국토 균형발전과 수급안정 용이성을 위해 동해안 권에 북방형 핵심광물자원 비축기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광물자원전쟁에 대응해야 한다.

[그림 3] 우리나라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 현황



9 산업통상자원부, 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수립·발표, 2022. 12. 30.

4 시사점

글로벌 경제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등 에너지와 식량 부국들의 무기화가 자칫하면 국가 간 경제전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중간 첨단 기술 패권 전쟁도 반도체를 넘어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극복 해법이 절실하지만 자원의 빈국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실마리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각국의 셈법은 다르지만 자국의 실리를 전제로 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일치한다. 그러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으로 세제·예산·금융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글로벌 자원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아세안·인도·중동·아프리카·호주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수요, 요소비용 외에 회복탄력성, 자국실리 정책, 이해관계자 압력 등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가 등장하여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 FTA전략과 함께 국가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신 FTA확대 전략은 물론, 국내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광물 자원에 특례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결과에 급급하는 정책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자국의 실리가 담긴 핵심광물자원 생태계를 차분히 조성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ETA T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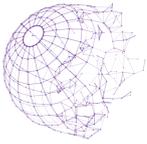


FTA REPORT



FTA 동향

-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레깅스의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상 타결
-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 국가별 동향 : 미국



관세청,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앞장선다!

관세청은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친환경 무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통관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환경정책 논의¹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관세청은 우수 재활용제품(이하 'GR 인증제품')² 25개 품목에 대해 9월 7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 고시」를 개정(9.7일 시행)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³(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추가하여,

[관세청 친환경 정책 개요]

① 친환경기업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관세분야 세정지원 탄소저감정책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대상 선정
② 불법수출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효율 전동기 등 에너지 낭비 유발 불법 기자재 통관관리 환경오염유발·온실가스 발생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
③ 그린 관세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없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탄소배출·에너지 절감 친환경 감시정 도입

- 1 세계관세기구에서 환경정책과 세관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그린 커스텀즈' 의제 : ① 태양에너지, 전기차 사용, 재활용 등 세관 운영 측면 조치사항, ② 세관절차 디지털화, ③ 친환경 관련 산업 감면, ④ 환경위해물품 단속 등
- 2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가 인증
- 3 농축수산물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목적이 아닌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요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수출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입증자료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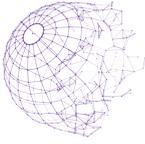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계적 기후변화·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세·무역 분야 친환경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에 추가된 '우수재활용제품' 품목 및 인증서류]

구분	우수재활용제품
대상 품목 (25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정제연료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재활용 메타크릴산메틸(MMA) 유기복합물,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성복토 및 뒷채움용 철강슬래그,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재활용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재활용 타이어 분말, 인조잔디용 고무분말, 폐화석 비료, 공업용 탄산칼슘, 패분, 부산물 비료(퇴비), 남은 음식물 사료(건식), 사료용 어분, 사료용 육골분, 육분, 혈분, 사료용 유지, 폐알루미늄을 이용한 알루미늄 탈산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재활용 산화알루미늄, 재활용 인듐, 재활용 주석, 재활용 코발트, 재활용 구리
인증서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의정서 발효

한-베트남 정상회담(2022.12.5.)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 의정서(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의정서⁴)」가 2023.9.10.(일)자로 발효되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⁵ 상호인정약정⁶(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과 ②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동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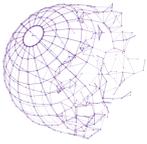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현재 총 25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유럽연합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기준)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레깅스의 품목은 속옷인가, 활동복인가?

관세청은 '제8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가 9월 7일(목)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 분류원 주관으로 12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관세청 장용요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⁷)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업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주도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품목분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71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Display Cover Glass)'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⁸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인 '레깅스'의 품목분류를 주제로 선정해, 레깅스의 재질, 형태 등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7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8 우리나라는 제70류의 안전유리로, 일부 국가는 제85류 등의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의견 제시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근래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히고 있어 품목분류에 혼란⁹이 있는 물품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¹⁰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토대로 앞으로 명확한 분류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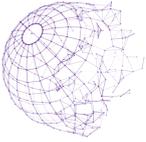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9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9 현재 레깅스는 바지(품목번호 제6104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 내의(품목번호 제6108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5.2%), 양말류(품목번호 제6115호/기본세율13%/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번호 해설서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10 [예시] 갑씨는 레깅스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면서 이를 양말류(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신고했지만, 세관에서 바지(한중 자유무역협정세율13%)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다면 약 10배의 세금을 추징받게 됨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은 슈하일 아반미(Suhail Abanmi)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9월 18일(13:30~14:30, 현지 시각)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4년 11월에 열린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로서, 고 청장 취임(23.7) 이후 중동 지역 국가와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다음을 논의했다.

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¹¹,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¹²)」 체결, ②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③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AEO MRA 체결) 양 관세당국은 이날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동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위험관리, 통관제도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③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양국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본 회의에 앞서 고광호 청장은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지고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등 국가 간 위험 화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관세당국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호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9월 22일(15:00~16:00, 현지 시각)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21년 9월 13일 열렸던 제4차 한-우즈베크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이다.

최근 9월 7일 한-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의, 9월 11일 한-우즈베크 외교장관 전략대화, 9월 19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되며 양국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②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③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업체¹³(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④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세관상호지원협정¹⁴ 개정) 양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한-우즈베크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¹⁵를 반영하기 위해 '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3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 // 미·중·유럽연합 등 97개국이 도입 중

14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유럽연합과 세관상호 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 (2023.9월 기준)

15 한-우즈베크 간 교역 규모 : ('08) 11.2억 달러 → ('22) 22.1억 달러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관세분야 기술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 양국 간 교역 원활화 및 마약 등 위험화물 단속 공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즈벡측은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송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기술,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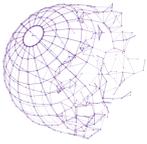
③ (AEO·FTA 협력) 양 관세당국은 각국의 AEO 제도 및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 향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동 제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국제협력 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벡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개최

고광호 관세청장은 레그지부 옷곤자르갈 몽골 관세청장과 9월 25일(10:30~12:00) 서울세관에서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9년 9월 31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¹⁶,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¹⁷) 전면 이행 협력, ②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및 ③위험관리·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분야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① (AEO MRA 전면 이행 협력) 양 관세당국은 양국의 우수업체(AEO)가 통관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전면 이행¹⁸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지난 '19.9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 약정의 전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 협의, 시범운영 등의 후속 논의 진행 단계에 있다.

② (능력배양 협력)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세관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1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18 전면 이행시 양국 간 약정에서 정한 검사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AEO 기업에게 적용 개시

한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몽골 관세당국의 스마트 관세행정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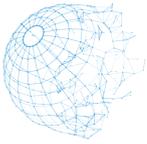
③ (위험관리·FTA 경험 공유)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청과 위험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도입·이행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10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 원활화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목)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¹⁹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compa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19 전구물질 배출량 :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 7.(목)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2021년 10월 양허 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여러 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

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과 22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을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²⁰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다.²¹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²²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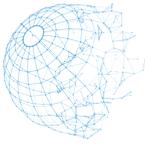
이번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21년 기준), 미국 지질조사국(USGS)

21 자유화율: (품목 수 기준) 한 94.8%,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필 97.6%

22 필리핀 시장 내 자동차 판매량(2022년) : 36.6만 대(전년 대비 28% 증가)

- 브랜드별 순위 : ①도요타 ②미쓰비시 ③포드 ④르노-닛산 ⑤스즈키 ... ⑨현대차·기아



과테말라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협상 타결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추가로 가입하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자유무역협정(FTA)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화)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²³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²⁴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 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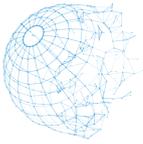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라면서,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 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23 (기존 중미 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24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95.3% 품목을 개방하고,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평균(95.4%) 대비 높은 95.7% 품목을 개방하기로 합의



유럽연합(EU)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9.21.(목) 16시(한국시간) 화상으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측은 지난해 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전년 대비 8% 감소한 9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머크·사토리우스 등 유럽의 바이오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對)유럽연합(EU)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양국이 교역·투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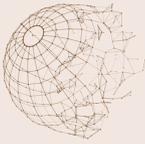
*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억 달러) :
(19)61.3 → (20)78.6 → (21) 102.2 → (22) 94.5

** '23.1~7월 對EU 바이오의약품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완제의약품 166.7%, 원료의약품 15.6%

이어 우리 측은 최근 개정안을 발표한 유럽연합(EU) 약사법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제안한 핵심의약품법의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EU 의료기기법(MDR)의 인증기관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美 급성장하는 대체 커피 시장에서 찾는 기회



미국의 대체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커피의 향과 맛은 거의 같지만 다양한 종류의 허브 또는 버섯 등을 주 원료로 만든 대체 커피(coffee alternative)가 원두없는 커피(beanless coffee)로 불리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이 시장조사기관 스탯이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소비재 기업에 대체 커피 제조 회사인 MUD/WTR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 전통적이지 않은 커피,
전통을 깨는 기업 문화

MUD/WTR은 30대의 젊은 창업가 셰인 히스(Shane Heath)가 건강한 대체 커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8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설립한 회사다. 테크 회사 근무 시절, 자신과 동료들의 카페인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두근거림, 초조, 불안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커피 창업을 시작한 그는 최근 여러 인터뷰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MUD/WTR이라는 스타트업이 급성장한 데는 전통적이지 않은 회사 문화도 눈길을 끄는데 이 기업의 독특한 문화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의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론 신입 직원들에게 45분간의 웰컴 명상 호흡 세션 제공, 격주로 전직원 금요일 휴무, 근무지 선택 자유(분기별 대면 미팅), 피검사를 통한 코르티졸(스트레스 호르몬) 테스트 및 수면 점검 등이다. 웬만한 스타트업들보다 팀과 복리후생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히스 대표는 "숙련된 직원을 잃는 비용이 회사에 가장 큰 적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베푼이를 주는 것은 마치 겉보기에 비싸 보이지만 실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은 뻑새다'는 고정관념과 전통을 깨야한다"고 자주 말한다.

▶ 업계 '왕좌'는 누가 차지할까?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는 미국은 물론 여전히 명실공히 세계 1위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루오션인 대체 커피 시장의 1위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대체 커피 브랜드별 점유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대체 커피는 2019년 스타벅스의 본고장 시애틀에서 시작된 분자 커피 애토모(Atomo)가 먼저 이름을 알렸다. 환경을 강조하며 푸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실험을 통해 커피 맛을 완벽 재현했다는 애토모 커피는 2019년 브랜드 론칭 후 2021년 9월 온라인으로 콜드브루 대체 커피를 제한적 판매 시작, 2022년 정식 소매 판매를 시작했다.

대체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존 커피 시장 장벽을 넘기 위한 실험으로 워싱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와 애토모 커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70%라는 압승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커피 업계에 도전장을 냈다. 콜드브루 오토밀크 라떼를 포함한 3종류의 콜드브루 캔커피만을 출시한 애토모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품은 모두 품질된 상태다. 하지만, 2023년 현재 신생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며 업계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유 있는' 대체 커피 시장의 성장

전 세계적으로 대체 커피 시장 규모는 2022년 27억 달러를 달성했다. 2030년까지 5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8.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체 커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욕구는 크게 증가했다. 커피 원두 재배와 수확 추출 등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카페인이나 이노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체내 무기질 균형을 깨뜨려 눈 떨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장 두근거림, 근육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대체 커피 업체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대체 커피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존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인 ESG 경영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애토모 커피사에 따르면, 대체 커피 콜드브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은 전통적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94% 적다. 탄소 배출 감소량도 93%에 달한다. 커피나무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숙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애토모사 대표는 “기후변화 때문에 커피 농장은 기존의 농장을 버리고 계속해서 더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반 커피 원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삼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두 가격 인상) 국제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세계 최대 로부스타 원두 생산국인 베트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 가격 폭등으로 원두 재배 대신 수익성 좋은 작물로 재배를 대체하며 원두 수확량이 최근 4년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세계 2대 로부스타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 피해, 곳곳의 산불과 폭우 등으로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로부스타 원두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맛) 커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커피의 바디, 색, 향, 맛은 물론 생체 활성 영양소까지 구현했다는 것이 애토모커피의 주장이다. 뒤이어 등장한 버섯 커피 'RYZE'사 등 경쟁업체들도 맛과 풍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 미국의 주요 대체 커피 업체

브랜드명 개요

MUD/WTR

MUD/WTR은 건강한 대체 커피를 만들겠다는 셰인 히스(Shane Heath) 대표의 목표로 2018년 설립됐다. 회사 설립 전 테크 회사에 근무했던 그는, 카페인 중독이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이 창업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주 재료는 유기농 카카오, 마살라 차이, 차가버섯, 강황, 시나몬 등이다. 웹사이트(www.mudwtr.com)에서 40달러에 판매 중이다.



Atomo

대추씨, 치커리 뿌리, 포도 껍질, 해바라기씨 겉껍질, 수박씨 등을 주재료로 한 대체 커피. 커피 원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커피 원료의 분자 단위까지 분석한 화학 공정을 통해 커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한 '분자 커피'다. 카페인도 함유돼 있다.

공동 창업자인 앤디 클라이치(Andy Kleitsch)와 재럿 스톱포스(Jarret Stopforth)는 식품 과학자와 화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커피계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기치로 창업했다.

2년 이상 동안 1000여 가지가 넘는 화합물을 조사해 커피 풍미에 영향을 미치는 40여 가지 화합물을 찾아냈으며, 연구개발 이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kickstarter)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



Ryze

버섯 커피(mushroom coffee)로 알려진 RYZE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두 명의 하버드 졸업생들이 2020년 창업한 회사로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버섯 커피 한 종류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체 설명에 따르면, RYZE 커피는 면역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 웹사이트(www.ryzesuperfoods.com)에서 30달러에 판매 중이다.

Teccino

차(Tea) 디자이너 캐롤라인 맥두걸이 시작한 Teccino는 치커리, 캐럽(carob/초콜릿 맛이 나는 암갈색 열매가 달리는 유럽산 나무), 민들레, 라몬씨(ramon seed/뽕나무과 식물의 씨앗) 등의 허브를 주재료로 한 커피 맛 음료이다.

커피와 같은 방식으로 브루잉이 가능하며 인공 감미료나 보존제, 카페인 등이 없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체 커피 외에도 35가지 유기농 차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의 제품은 헤이즐넛 향 대체커피로 웹사이트(<https://teccino.com/collections/herbal-coffee>)에서 14.99달러에 판매 중이다.

자료: 각 업체 웹사이트



▶ 시사점

한국은 '커피 강국'이다. 원두 생산국이 아니지만 커피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 미국의 대체 커피 시장은 블루 오션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과거, 보리를 저온에 볶아 만든 커피 등이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졌지만 세상이 변해 승산이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뉴욕에서 커피전문점 세 곳을 운영 중인 커피 사업가 K씨는 7일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대체 커피 메뉴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고 실제로 매출 지표를 보면 디카페인 커피와 마차(matcha) 라떼 등의 메뉴가 꾸준히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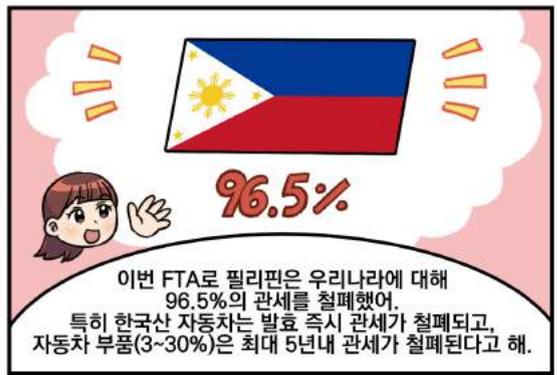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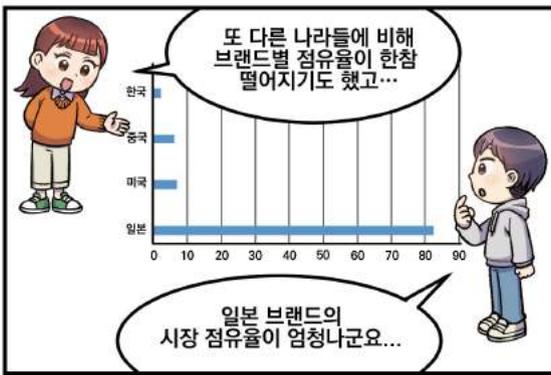
대체 커피 브랜드와 콜라보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시도해보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전미커피협회(NCA)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은 커피를 마시며 매일 마시는 인구는 62%에 달한다. 커피를 마시는 미국인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3잔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 농무부가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은 2026년까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 National Coffee Association, USDA, Statista, Bloomberg, Business Insider, ICO 등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이처럼 커피 소비량이 많은 미국에서 대체 커피가 대중화될 경우, 어떤 업체가 대체 커피 업계의 스타벅스 역할을 하게될 지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ETA TRAD



FREE REPORT



FTA EXPERTS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김대훈 |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미국 등의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고준성 |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FTA 단순 조립 판정 방법



김대훈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관세사



1 개요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하였으며, 남미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계속하여 FTA 협상 중에 있다.

FTA협정은 협정별로 상이한 규정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이다. FTA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FTA 당사국 내에서 최종 제조·생산된 물품인지 여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 제조·생산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에 해당되면, 개별 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불인정공정은 단순공정, 최소공정 등으로 표현되며,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국에서 충분가공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충분가공원칙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킬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해외 생산기지 활용, 원재료 공급망의 다각화 등으로 현대의 생산 공정에서,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공정이 수행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이러한 현대 생산 공정의 현실을 반영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가공을 충분 가공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이 충족되더라도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제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불인정공정: 단순 조립

FTA 협정 불인정공정에는 이견 없이 명확하게 규정된 공정과, 해석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규정되어 있다.

‘동물의 도축’, ‘포장의 변경’, ‘병·캔 등에 단순히 담는 공정’, ‘라벨 부착’ 등의 규정은 누구나 이견 없이 규정된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가공’, ‘단순 조립’ 등의 경우 상품(제품) 제공공정을 확인하여 그러한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공정’인지 수출자(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원산지상품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 생산에 필수 공정인 조립공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단순한 조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생산자가 원산지 판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제품생산에 조립공정이 있는 경우 제조공정도에 조립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여러 단계의 조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조립 공정별 설명 등 자세한 설명과 작성이 필요하게 된다. FTA 협정별 단순 조립에 대한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FTA 협정별 불인정공정(조립) 규정 발취

협정명	규정 내용
한-칠레	(제4.13조 불인정공정)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한-싱가포르	(제4.16조 불인정공정) 자. 완전한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단순 조립
한-EFTA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아세안	(제8조 불인정공정)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합
한-인도	(제3.6조 불인정공정) 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EU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페루	(제3.5조 불인정공정) 자.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미국	규정 없음
한-튀르키예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호주	(제3.12조 불인정공정) 아.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한-캐나다	규정 없음
한-중국	(제3.7조 최소공정 또는 가공) 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뉴질랜드	(제3.14조 불인정 공정 및 절차)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
한-베트남	(제3.7조 최소공정 또는 가공)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협정명	규정 내용
한-콜롬비아	(제3.14조 불인정 공정) 차.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중미	(제3.5조 불인정공정) 차.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영국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RCEP	(제3.6조 최소 공정 및 가공) 단순 조립 규정 없음
한-이스라엘	(제3.6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거.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한-캄보디아	(제3.7조 불인정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한-인도네시아	(제3.7조 불인정 공정)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3 불인정공정 판단

FTA 협정에 따라 '단순한' 단어 의미를 규정한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다.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지 않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단순한' 의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인도 CEPA 협정에서는 단순한 조립을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기계·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를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가공공정을 거친 원재료를 매입하여 수출물품을 조립하는 경우 최종수출자(생산자)의 행위는 단순조립이라고 하더라도 원재료 가공공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인정공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들이 조립이 되며, 이러한 부품들은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게 된다.

원산지 판정 시 마지막 수출자(제조자)가 행하는 공정만을 판단하게 되면, 단순한 조립으로 판단하여 비원산지 제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FTA 원산지 입증책임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품 생산 전반적인 공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13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또는 제조공정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순조립에 대한 해석은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그 한계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조립공정이 포함되며, 조립공정의 작업 범위란 다양하기 때문이다.

FTA 협정문, 국내법 등에 단순조립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석에 대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입증 책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원산지 판정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원산지 사후검증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산지 검증 주체인 관세당국에서 명확한 지침 또는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FTA 협정에서 규정한 단순조립으로 원산지 제품으로 불인정된 사례 공유, 제품의 큰 범주로 유형화 시켜 충분가공 범위를 예시화 하는 내용 등 원산지 입증 책임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FTA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불인정공정 판정 등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FTA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원산지 판정 오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컨설팅, FTA 교육을 포함하여 FTA 관련된 모든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법령 및 협정 정보 안내, 해외 관세율 조회 및 FTA 관세 실익 분석, HS CODE 검토, FTA 원산지 입증서류 작성 지원 등 종합적인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FTA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경기지역 FTA 통상 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접수를 하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ggfta.or.kr



FTA 1:1 기업방문 컨설팅



FTA전문컨설팅 신청

FTA 전문컨설팅 신청

FTA 1:1 기업방문 설명회



기업방문FTA설명회

기업방문 FTA 설명회

미국 등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안보통제 도입 및 시사점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 미국의 최근 해외투자 안보통제 도입 배경

2023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려 국가'로서 중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i)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ii) 양자 정보 기술 그리고 (iii) 인공 지능 시스템 등 3개 부문에 대한 특정 유형의 미국(인)의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를 규제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EO')을 공표했다.

이보다 조금 앞선 2023년 7월 25일, 미 상원은 민주당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 코닌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¹을 91대 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2023 해외투자 투명성법”(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of 2023': 'OITA')²으로 칭하는데, 8월의 행정 명령에 비해

1 Amends Bill: S.2226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 <https://www.congress.gov/amendment/118th-congress/senate-amendment/931/text>.

2 참고로 OITA는 이전에 상원에서 발의된 “2022 국가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of 2022: '2022 NCCDA' 또는 '개정 NCCDA’)” 법안에 비해 해외투자 통제의 범위를 축소하고, 통제 수준 역시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많은 우려 국가를 포함하고, 초음속 항공기 및 위성 기반 통신 등 투자 통제 대상 분야도 넓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투자를 통제하는 입법 조치를 도입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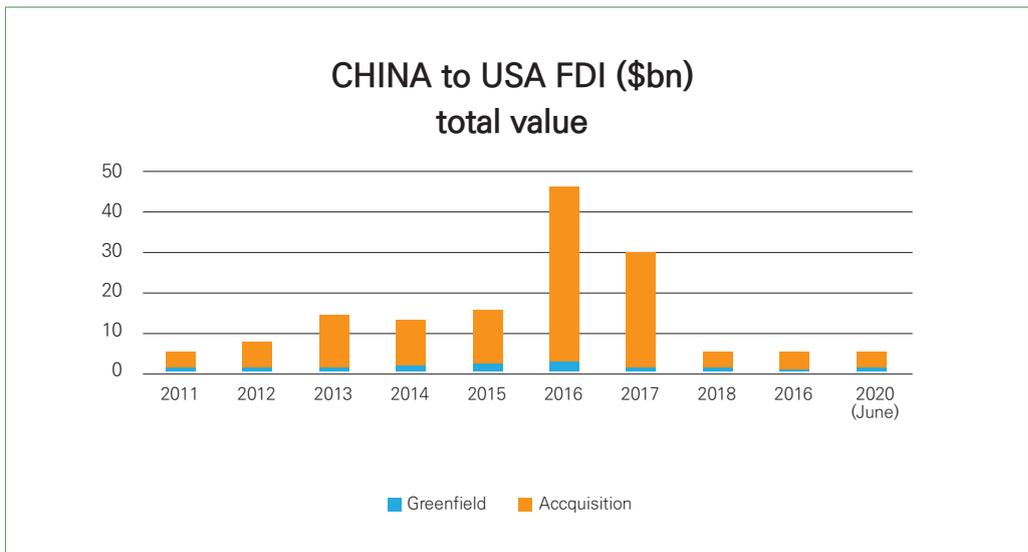
먼저 중국은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FDI)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를 통해 미국의

핵심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중국계 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인수를 통해 전략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에의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對美 FDI는 2018년 이후 급락하였고, M&A형 투자는 사실상 단절되기에 이르렀다(<그림 1>).

〈그림 1〉 미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전후 중국의 對美 FDI 유형별 추이 (2011-2020년 6월간)



이에 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그림 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지정학적 긴장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對中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가 급감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중국에서 미국의 FDI가 가장 많이 유입된 산업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서 미중 간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또한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 스타트업은 2010년 이후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500억 달러 이상의 벤처 투자를 받았다.

더욱이 중국으로부터의 대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가 강화된 2018년 이후인 2019년에도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약 42억 달러의 R&D 비용을 투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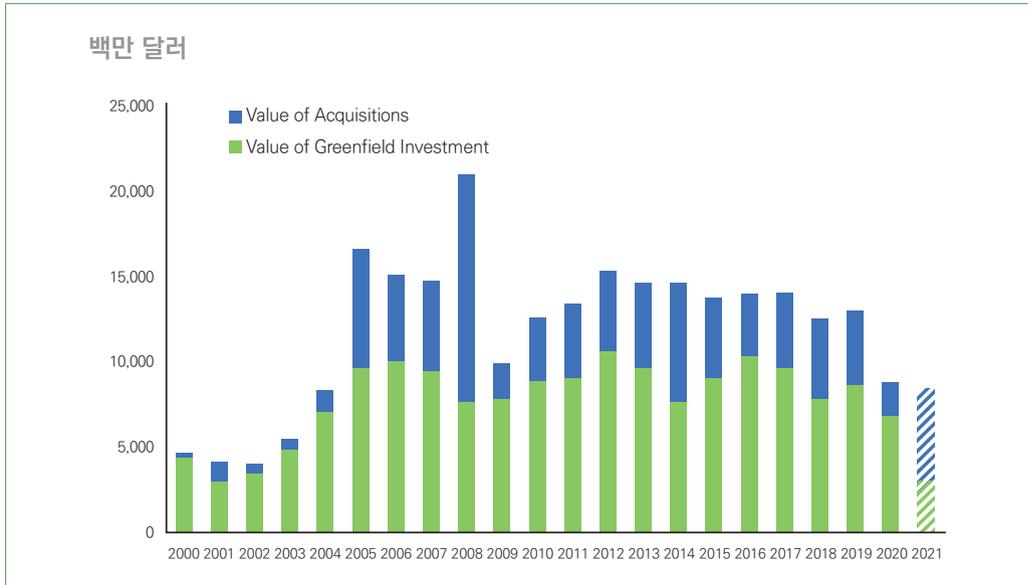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對中 해외직접투자, 특히 미국 기술기업의 對中 직접투자는 민감 기술 및 노하우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민간 및 군사 역량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특히 미 의회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OITA를 발의한 케이시 상원의원은 "OITA는 미국의 국가 안보 기술과 노하우가 적국의 손에 들어가게 될 위험에 대해 미국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동법의 또 다른 발의자인 코닌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에 반도체나 AI와 같은 기술에 투자할 때 그들의 자본, 지적 재산, 혁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감시를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 취약성을 보다 잘 평가하여 적의 위협에 맞서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³

3 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gives the United States'visibility into investments in national security sectors made in countries of concern, includ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casey.senate.gov/news/releases/casey-cornyn-bill-to-screen-us-investment-in-china-overwhelmingly-passes-senate-2023..>

〈그림 2〉 미국의 대중 FDI 유형별 거래 규모 추이(2000-2021년간)



출처: Rhodium Group. 2021년은 잠정 수치

2 미국 해외투자투명성법(OITA)안의 주요 내용⁴

가. 입법 취지

미국은 특별히 중국을 비롯한 우려되는 해외 국가들에 대한 직접 투자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혁신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코로나 19는 중국의 핵심 공급망 통제와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U.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의 투자를 통해 단순히 제조를 넘어 자신들의 자본, 지적 재산 및 혁신을 중국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이중용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대중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에서는 그러한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4 이에 관해서는 G.M. Cinelli, etc., CONGRESS OUTLINES SCOPE OF NOTIFICATION PROCESS FOR OUTBOUND INVESTMENT IN NON-US JURISDICTIONS, 2023.8.2.와 U.S. Senators John Cornyn (R-TX) and Bob Casey (D-PA), 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of 2023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미국 핵심 기술 등의 유출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OITA(해외투자투명성법) 입법이 추진되었다.

나. 핵심 장치

OITA(해외투자투명성법)안에서는 미국 기업의 적대적인 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통지(notification)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상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OITA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미국 법인은 중국을 포함한 우려 대상 국가의 대상 부문에 대한 특정 투자 활동을 대상 활동의 예상 완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미 재무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즉, 이러한 유형의 해외 투자 통지를 통해 이중 용도를 가지는 미국의 국가 핵심 역량이 적대국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상무부와 협력하여 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주관하는데, 해당 활동을 금지 또는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활동을 법무장관에게 회부할 수 있는

권한과 재무부에 통지되지 않은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 통지 대상 국가 핵심역량 분야 및 투자 활동

통지 대상 국가 핵심역량 분야에는 반도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중용도 배터리, 양자 기술, 인공 지능, 위성 기반 통신, 초음속(hypersonic), 이중용도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수출 통제 기술이 포함된다.

대상 투자(활동)에는 하나 이상의 국가 핵심 역량 부문과 관련된 생산, 설계, 테스트, 제조, 제작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의 자회사나 합작회사의 설립 즉, 그러한 그린필드 투자 및 합작투자 그리고 운영협력, 이사회 참여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된다.



3 미 대통령의 2023년 8월 9일 행정 명령(EO)⁵

가. 개요

2023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핵심적인 민감·첨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악용하려는 우려 국가가 제기하는 미국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명령(EO)을 공포하였다.

그 취지는 차세대 군사 혁신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 대통령은 재무부, 하야금 상무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새롭고 표적화된 국가안보 프로그램을 담은 규칙(regulations)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적용 대상 실체 및 거래

적용 대상 우려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PRC)만 지정하였음이 주목된다. 다음으로 적용 대상 거래에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거래, 특히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및 기타 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그린필드 투자 및 합작 투자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O에서는 다음의 3개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i)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로서 재무부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또는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첨단 집적 회로의 설계, 제조 또는 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저급 집적회로 (less advanced integrated circuits)의 설계, 제조, 패키징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5 이에 관하여는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Public Affairs Press Release: August 9, 2023, Treasury Public Affairs, Press@Treasury.gov; FACT SHEET: President Biden Issues Executive Order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Treasury Department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larity and Solicit Comments on Scope of New Program을 참조하였다.

(ii) 양자정보 기술과 관련 양자컴퓨터 및 특정 부품 생산, 특정 양자센서 개발, 양자네트워킹 및 양자통신 시스템 개발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ii)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과 관련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사 또는 정보 용도를 가질 수 있으며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최종 용도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최종 용도(예: 군사 감시 최종 용도)를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법인에 대한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이의 금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 중이다.

4 동맹국에의 동참 추진: EU의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 모색⁶

미국 정부는 우려 국가에의 해외투자를 통해 미국 핵심 기술이 유출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그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도 자국과 유사한 해외투자 안보 통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핵심 동맹인 EU는 2021년 출범한 “미국-EU 간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라는 협의체를 통해 투자 안보에 대한 대응을 상호 조율하기로 약속하여 논의 중에 있다.

특히, EU는 2023년 6월 경제 안보 전략에서 유럽위원회가 연말까지 특정 해외 투자 통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U 기업의 자본, 전문성 및 지식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실체들의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 능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수의 민감기술과 관련된 해외 투자에 대해 대상이 특정된 (targeted)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6 이에 관하여는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uthor: Gisela Grieger, Members'ResearchService PE 751.470 -September 2023, US approach to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을 참조하였다.

5 전망, 시사점 및 대응 과제

가. 전망

OITA(해외투자투명성법)는 하원과의 조정이 남아 있어 그 법안의 채택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OITA안은 통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하여 업계로부터의 강한 반대를 받았던 2022 NCCDA(국가핵심역량방어법)⁷안을 상당히 완화하여 채택 시 큰 수정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비해 대통령 EO의 경우 재무부가 규칙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된다. 한편, EU에서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의 형태 및 수준은 연말까지 진행 중인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

다만, 대내 투자(inbound investment)에 대한 안보 심사 조치 도입에 대해서는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차원에서 적극 공조하였던 것과 달리 대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통제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영 자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EU 등 동맹국들의 공조가 불투명해 보인다.

나. 시사점

그간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글로벌 투자 환경을 옹호해 왔고, 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도 對內 투자에 국한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미국의 OITANA EO에 따른 재무부 규칙의 도입은 전통적인 투자정책으로부터의 일탈 내지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의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을 타깃으로 한 핵심 기술과 제품 및 산업 분야에 있어 무역, 투자, 공급망 및 산업역량 분야별로 도입된 일련의 경제·국가 안보 조치에 있어 남아 있는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국판 경제안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하는 의미를 가진다(<표 1> 참조).

7 2022 NCCDA안은 OITA안을 발의하였던 케이지 상원의원 등이 미국이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 통제를 위해 발의한 바로 이전의 법안을 가리킨다.



〈표 1〉 미국의 분야별 경제안보 조치 현황

분야		안보조치 법적 근거
무역 통제	수출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Entity List('19.5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국방수권법의 일부인 수출통제개혁법(ECRA, '18.8월)	
	수입	ITC기술·서비스 공급사슬 확보를 위한 EO('19.5월)
투자 통제 ⁸	외투(inbound FDI)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MA, '18.8월)
		2022 (개정) 국가핵심역량방위법안 ('22.6월 상원 발의)
	해투(outbound FDI)	입법 추진 중 (2023 OITA, 2003.8. EO)
공급망 강화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21.2월)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1차 보고서('21.6월 공표)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2차 보고서('22.3월 공표)
산업역량 지원		2022 반도체법(반도체과학법 A부)
		2022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기술·제조혁신 행정명령('22.9월 공표)

작성: 필자 작성

8 미국 입장에서 자산이 외국으로부터 미국 국내로 들어오는 유입(inflows)을 가리켜 대내투자(inbound investment)라 하며, 이와 반대로 자산이 미국으로 외국으로 나가는 유출(outflows)을 가리켜 대외투자(outbound investment)라 한다. 우리의 경우 관행상 전자를 외국인투자, 후자를 해외투자로 구분하여 부른다.



다. 대응 과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제·국가 안보에 기초한 대중 핵심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통제 조치는 법의 지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공정 경쟁 등과 같은 미국 가치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 근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깊은 불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러한 미국의 對中 경제안보 통제 기조는 중국 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생태계에 있어 분절(decoupling)을

‘뉴노멀’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EO에 따른 재무부 규칙의 시행과 OITA 안의 발효 시 이에 따른 우려 국가(중국 등)에의 적용 대상 민감기술 분야에의 M&A를 포함한 해외투자에 있어 미국의 해투안보 통제 조치에 저촉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려 국가에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ETA TRAD



REPORT



FTA ANALYSIS

한국의 EODES 구축(시) 효과 추정

윤호성 |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팀장

한국의 EODES 구축(시) 효과 추정



윤호성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팀장

1 EODES 구축 필요성 및 현황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 및 종이 없는 무역을 목표로 자동화된 세관 시스템, 전자적 단일창구 구축 필요성이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및 UN ESC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종이 없는 무역 촉진에 관한 기본 협정」(FA-PT) 등의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우리측 개별 FTA에서도 「통관 및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챕터에 '종이 없는 무역', '자동화 기술 사용'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 챕터나 디지털 통상 협정 형태로 EODES¹ 구축 근거 조항²을 규정하여 무역 행정 문서의 비물질화 및 국가간 원산지 정보 교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³에 따르면 「종이 없는 무역」의 궁극적 목표는 관련된 모든 정보 흐름을 비물질화하여, 기업과 정부(BtoG) 또는 정부(GtoG) 간 무역관련 데이터 및 문서 흐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1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 2 한-중 FTA(제3.27조), RCEP(제3.29조), 한-캄보디아 FTA(제3.27조), 한-인도네시아 CEPA(제3.25조), 한-싱가포르 DPA(제14.12조제5항 및 제6항), DEPA(제2.2조제5항~제8항)
- 3 DIGITAL TRADE FACILITATION: PAPERLESS TRAD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7)

이러한 「종이 없는 무역」은 무역행정서류의 발급 비용 절감, 수출입자 신고 오류 저하, 신속한 통관·심사 가능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국제협정의 조치 및 조항을 27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중 「원산지정보 전자 교환」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EODES 구축 장점

EODES 장점	내용
통관시간 단축	수출당사국에서 C/O 발급 즉시 실시간으로 원산지정보가 교환되어 수입당사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혜관세신청 및 수입당사국 C/O 심사 시간 단축 가능
통관애로 차단	C/O 위변조·도난·분실·훼손 및 진위여부 논란을 차단하여 C/O 형식적 요건으로 인한 통관애로 차단 가능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원본 국제 배송일 및 통관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가능

자료 : 저자 작성

관세청은 무역원활화, 협정 활용 제고, 통관애로 차단 등을 목표로 기관발급 협정에 EODES 구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16.12월), 인도네시아('20.3월), 베트남('23.7월)과 EODES가 구축되었으며, 인도와는 `23년 11월 0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표 2] 우리측(한국) EODES 구축 현황

구분	상대국	추진경과
구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EODES 전면 시행('16.12월) · 한-중 APTA ('17.5월)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e-CO 교환 합의('18.12월) · C/O 자료교환 기술적용 실무회의('19.2월) · EODES 구축을 위한 MOU 체결('19.4월) · EODES 구축 완료 및 실데이터 기반 자료교환('20.3월) · 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개선사업 추진 완료('20.11월)

구분	상대국	추진경과
구축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18.7월) · 구축에 합의('20.4월) · 원산지증명서 EODES 운영 관련 양해각서 체결('22.10월) · 한-베 FTA EODES 전면 시행('23.7.15.)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당국 간 EODES 구축 실무협약('18.1월) · 인도 총리 방한 시 정상 간 EODES 추진 합의('19.2월)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MOU 체결 ('19.5월) · 한-인도 EODES 시범운영 : '23. 11. 8. · 한-인도 EODES 전면 시행 : '23. 12. 22.
추진 중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가포르 DPA(디지털 동반자협정) 발효('23.01.14) · 조회형 e-C/O 우선 추진 합의('21.9월)
제안중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DES 도입 제안 및 기술제안서 송부-1차('19.10월),2차('20.12월)
	라오스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DES 구축 제안 서한문 발송 · 라오스/미얀마('19.8월)
	필리핀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DES 구축 제안 회의 개최 · 필리핀('19.10월), 캄보디아('19.11월)

자료 :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 EODES 구축(시) 효과 추정

가. EODES 효과 개념 정립

기존 EODES 설명자료 및 관련 연구에서 EODES 도입 효과는 실시간으로 원산지정보가 교환되어 신속 통관이 가능하며, 물류비용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EODES 구축(시) 효과를 기존 종이 C/O 발급·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 하였다.⁴

4 EODES 구축으로 C/O 발급시 실시간으로 원산지정보가 교환 되므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며, C/O 심사 시간도 짧아지거나, 자동 심사가 가능하다.

[EODES 구축 운용으로 인한 효과 정의]

- 종이 C/O를 이용할 때는 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 수입국 세관에 전달되는 발급·유통 과정을 거치나 EODES는 C/O 정보를 상대국 세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므로 수출부터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절차가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감소할 수 있음
- 세부적으로 EODES가 운용되면 아래의 ③~⑤ 단계가 생략되는 효과가 있음. 아울러 ③~⑤ 단계에서 종이 C/O의 도난·분실·훼손 등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으며, 외국세관의 C/O 진위 여부 의심에 따른 통관 지연 문제도 감소함

[종이 C/O의 국가간 이동 · 제출 흐름(인도 예시)]



자료 : 태국 등 ASEAN 국가와의 EODES 구축 활용방안 연구(관세청, 2022)

[EODES 구축(시) 효과 정의 및 경제적 효과 추산(추정) 비용]

구분		내용
EODES 효과 정의		기존 C/O 발급/유통으로 발생하는 비용 = EODES 구축 효과
EODES 효과 산출 비용	우편비용	C/O 원본 우편발송 비용(③ 절차 관련)
	물류비용 (해상+항공 화물)	우편 발송 기간만큼 통관기간 단축 비용(화물보관비 절감)(③~④ 절차 관련)
		수입당사국 C/O 심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화물보관비(⑤~⑥절차 관련)

자료 : 저자 작성

나. 한국의 EODES 구축(시) 효과 추산 결과(2022년 수출기준)

앞서 정의된 EODES 구축(시) 효과 및 효과 추산(추정) 비용을 바탕으로, 총 12개국 대상 (A) 해상화물 보관료 절감액, (B) 항공화물

보관료 절감액, (C) 국제우편료 절감액(C) 등 총 3개 영역에 대한 EODES 구축(시) 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3] EODES 구축(시) 효과 추산 산식

구분	산식
A 해상화물보관료 절감액	(C/O 우편 발송기간 + C/O 심사 기간) × 수출 컨테이너 수 × 컨테이너 1일 보관료 × FTA 활용률
B 항공화물 보관료 절감액	(C/O 우편 발송기간 + C/O 심사 기간) × 수출 중량 × 톤당 1일 보관료 × FTA 활용률
C 국제우편료 절감액	C/O 원본 국제 우편비용 × 연간 C/O 발급 건수

자료 : 저자 작성

주 1) C/O 우편 발송기간 : EMS 국가별 우편 발송 기간

주 2) C/O 심사기간 : 수입국에서 C/O 심사 기간(유관기관 및 선사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주 3) 해상화물 컨테이너 1일 보관료 및 항공화물 톤당 1일 보관료 : 선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12개국 대상 EODES 구축(시) 총 효과는 (A+B+C) 최소 1,543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A) 해상화물 절감액 1,321억원, (B) 항공화물 절감액 136억원, (C) 국제우편료 절감액 85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2022년 수출 기준 총 EODES 구축(시) 효과 추정 금액(최소 금액)

국가	A 해상화물 추산 (억 원)	B 항공화물 추산 (억 원)	C 국제우편료 절감(억 원)	총 EODES 효과 추산(억 원) (A+B+C)
중국	505.4	97.0	42.5	645.0
인니	185.9	-	6.9	192.8
인도	332.6	1.1	15.4	349.1
베트남	126.5	0.1	9.5	136.1
싱가포르	59.6	-	0.2	59.8
필리핀	24.6	9.4	1.8	35.8
태국	66.2	21.9	6.3	94.4

국가	A 해상화물 추산 (억 원)	B 항공화물 추산 (억 원)	C 국제우편료 절감(억 원)	총 EODES 효과 추산(억 원) (A+B+C)
말레이시아	18.6	6.0	2.5	27.1
미얀마	0.09	-	0.15	0.2
캄보디아	2.07	0.8	0.107	3.0
라오스	-	-	0.023	0.023
브루나이	0.003	-	0.005	0.008
총합계	1,321.6	136.3	85.3	1,543.2

자료 : 저자 작성

주 1) 일부 국가는 해상화물 컨테이너 화물 수출이 확인되지 않음

주 2) 일부 국가는 항공화물 수출이 없거나, 항공화물 보관료가 수집되지 못함

주 3) EODES 구축(시) 효과는 최소(b C/O 심사 기간) 및 최대(a C/O 우편 발송기간 + b C/O 심사 기간) 효과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해당 표는 최소 효과 금액에 해당함

3 맺음말

종이 없는 무역, 무역원활화, 정보화기술 사용 등의 일환으로 기업간, 정부간, 기업과 정부간 무역 행정 서류를 전자화하여 교환하는 전자송장·EODES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 논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목표로 디지털통상규범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력 및 협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관세당국은 EODES를 협정상대국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FTA 활용률 제고 및 전통적 원산지 증명서 발급·유통으로 발생하는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우리의 EODES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관련 해외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TA TRAD



FTA REPORT



FTA 품목분류

통칙 제3호를 적용한 WCO HS 위원회 품목분류 사례해설

오수교 | KPMG 관세법인 관세사

통칙 제3호를 적용한 WCO HS 위원회 품목분류 사례해설



오수교
KPMG 관세법인
관세사

1 서론

이 글은 WCO HS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 중에서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는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품목분류를 할 때 유념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분류 규정을 정하고, 이 규정은 차례대로 적용한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WCO HS 위원회는 ① HS 협약의 개정을 제안하거나, ② HS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대한 지침으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와 분류의견서(classification opinion)를 작성하거나, ③ HS 품목분류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이견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서 WCO 사무국에

질의할 수 있다.

이 질의를 받은 사무국은 HS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토의결과 다수의 의견을 얻은 품목 번호로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분류의견서로 작성하여 회원국에 통보한다.

이 분류의견서는 권고의 성격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할 때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2 통칙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의사항과 쟁점

통칙 제3호는 ① 통칙 제2호나목이나 ②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선 통칙 제2호나목은 ① 서로 다른 물질(substrate)의 혼합물(mixture)이나 재료(material)의 복합물(combination)에 적용하지만, 혼합물이나 복합물이 특정한 단일 물질이나 재료로 분류하는 호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통칙 제3호의 각 목을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사항을 미루어보면 ① 서로 다른 구성요소의 복합물(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이나 세트 물품(goods put up in set for retail sale)에 해당하거나, ② 제16부 주 제3호나 제90류 주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음에 설명하는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 참조), ③ 혼합물이나 복합물이 아니라도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점프볼(jump ball) 참조]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칙 제3호를 적용하는 “그 밖의 다른 이유”란,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이든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S 해설서 통칙 제3호가목의 해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는 사례로 ①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제8510호), ② 자동차용의 터프트한 양탄자(제5703호), ③ 틀을 끼우지 않은 항공기용 안전 유리(제7007호)를 예시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들을 통칙 제1호(호의 용어)를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이 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실무에서 굳이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 품목분류의 다툼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물론 자동차용의 터프트한 양탄자를 제8708호 (자동차용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5703호로 결정하거나 자동차용 백미러를 제8708호 (자동차의 부분품)로 결정하지 않고 제7009호 (백미러를 포함한 유리 거울)로 결정한 이유가 통칙 제1호가 되더라도, 추가로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품명(name)이 종류(class)보다 또는 어느 품명이 그 물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런 호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칙 제3호나목에서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할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HS 해설서 통칙 제3호나목의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① 성질(nature), ② 용적(bulk), ③ 수량(quantity), ④ 중량(weight), ⑤ 가격(value)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⑥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여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우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일되지 않고 물품에 따라 다르므로 실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한 물품의 기능(function)도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



3 통칙 제3호 적용한 WCO HS 위원회 사례해설

3-1. 통칙 제3호나목 적용 사례

다음은 WCO HS 위원회에서 이 통칙을 적용한 사례이고, 해당 물품은 [그림1]과 같다.

(1) 아동용 캐리어

① 물품설명

신체 구조에 맞게 형태가 갖추어진 방직용 섬유로 만든 좌석(알루미늄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다), 패드를 댄 어깨끈과 엉덩이 부분에 벨트 앵커 포인트·안전장비·분리 가능한 얼굴 패드와 다양한 보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품은 아동 한 명이 앉아 있는 상태로 성인 등에 업어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물품은 최대중량 하중이 20kg이다.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뒷부분 쪽으로 지퍼를 완전히 잠가서 배낭처럼 짊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7호바목), 제3호나목, 제6호를 적용하여 제6307.90호(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로 분류하였다.

HS 해설서 제6307호에서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과 이와 유사한 운반 용구(carrier)”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물품의 구조나 기능으로 보아 제4202호의 배낭보다는 아동의 운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반면에 가방(배낭)은 물건을 넣는 것이고 물건을 넣은 후에는 지퍼를 잠그는 것이 일반인데, 이 물품은 사람을 운반하고 사용할 때는 지퍼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방과 차이가 있는 물품이라 할 수 있다.

제11부 주 제7호바목은 “여러 조각을 봉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은 제11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므로 제6307호로 분류하기 위해 당연하게 적용한 것이다.

(2) 클린룸용 면봉

①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플라스틱)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한쪽 끝은 폴리에스테르 편물의 2개 층을 열 결합하였다. (길이 12.8cm 또는 16.2cm)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제6307.90호(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로 결정한 사례이다.

즉, 청소용으로 폴리에스테르(합성섬유) 편물이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기 때문이다. 만약 손잡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3926호로 분류한다.



(3) 유리 샤워 부스

① 제품설명

옆 출입구가 있으며 4mm 두께의 강화 안전 유리로 만들어진 판 4개와 아래의 조립 부품을 함께 제공한다.

알루미늄 프레임 섹션 2개, 상단 및 하단 레일 2개, 씰(seal), 바퀴 및 작은 금속 손잡이 2개 조립하고 나면, 미닫이문과 함께 4개의 판이 알루미늄 세미 프레임 샤워 부스를 형성하며,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885mm x 885mm, 높이는 1850mm이다. 이 모델은 샤워 트레이(shower tray) 없이 제공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유리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에 따라 제7020.00호(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로 결정한 사례이다.

[그림1]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WCO 사례 물품

			
(1) 아동용 캐리어	(2) 클린룸용 면봉	(3) 유리 샤워 부스	(5) 스마트 워치

쟁점은 이를 알루미늄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다. 샤워 부스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샤워할 때에 물이 다른 곳으로 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유리가 이 역할을 하므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4) 적층 물품

① 물품설명

니켈 박(foil)으로 된 외부의 두 개의 층과 부전도체인 중합체(폴리올레핀·불소수지 등)와 전도체인 카본블랙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내부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깥의 각층은 두께가 0.025mm이고 내부의 층은 두께가 0.3mm이다. 30cm×40cm의 시트에 담겨 제시한다.

이 물품은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과전압이나 고온에 노출되는 배터리·전화기·60V 미만의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한 리셋 가능한(resettable: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능한) 퓨즈로 사용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 제7506.10호(합금하지 않은 니켈 박)로 결정한 사례이다. 즉, 비록 두께는 얇더라도 전도체인 퓨즈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외부의 두 개 층으로 구성된 니켈 포일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보았다.

참고로 절연체인 플라스틱 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제3921호로 분류한다. 물론 완성된 형태의 퓨즈는 제8536호에 해당한다. 즉, HS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루프(loop)나 그 밖의 접속수단을 갖춘 짧은 루프선은 이 호로 분류하지만 그렇지 않은 퓨즈 선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와 같은 직사각형 물품은 니켈의 제품(제7508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5) 배터리 작동식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① 제품설명

“스마트 워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크기는 길이 51mm×폭 36mm×두께 10mm이다. 데이터수신과 전송을 할 수 있으며,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터치감응방식 1.6인치(41mm)의 투과반사형 디스플레이·512MB 램·4GB 내부 메모리·1.2GHz 프로세서·420mAh 배터리·가속도계·나침반·자이로·GPS가 결합되어 있다.

이 장치는 공개 무선 기술 표준[예: 블루투스 (Bluetooth®) 무선통신규약처럼 개인 영역네트워크(PAN) 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단파를 단거리(10m까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라디오 송수신기를 가지고 있어, 이 장치를 통하여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셀룰러 네트워크용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치는 근거리 자기장통신(NFC) 성능을 가지고 있다. 손목에 착용이 가능한 이 장치는 일단 호스트(host) 장치와 한 쌍을 이루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간과 날짜 정보의 표시·알람·스톱워치·타이머·만보계·수신되는 이메일과 통지에 대한 열람과 사전에 정의된 응답의 발송·호스트(host) 장치의 음악 플레이어 기능의 작동을 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무선 통신기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과 제6호에 따라 제8517.62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이 복합기기는 HS 4단위 호 기준으로 최소 8개 정도(제8517호, 제9102호, 제8519호, 제8526호, 제8531호, 제9014호, 제9029호,

제9106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제8517호(음성·영상의 수신용 기기)나 제9102호(손목시계) 중에서 어느 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가리게 되었고, 나머지는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다만,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와 다기능 기계는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토록 규정하나, 이 물품은 제9102호(손목시계)와 경합이 되므로 이 주를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것이다.

3-2. 통칙 제3호다목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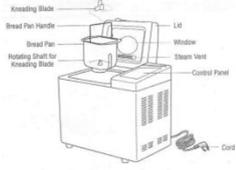
다음은 WCO HS 위원회에서 이 통칙을 적용한 사례이고, 해당 물품은 [그림2]와 같다.

(1) 눈금이 매겨진 점적기(點滴器) 튜브

① 제품설명

눈금이 매겨진 점적기 튜브이다. 두 개의 다른 구성요소가 함께 결합하여 액상의 의약품과 같은 제품을 측정된 복용량씩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튜브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한 WCO 사례 물품

			
<p>(1) 눈금이 매겨진 점적기 튜브</p>	<p>(3)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p>	<p>(4) 차량용 긴급구호용 키트</p>	<p>(5) 플라스틱 점프볼</p>

-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로 된 관 모양의 복용량 측정기(0.25ml부터 1.0ml까지 눈금이 새겨져 있다. 길이는 5.8 cm이고, 양쪽 끝의 지름이 다르다(중량 1.1g).
- 가황고무로 된 실린더 모양의 꼭지(중량 2.4g)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4014.90호[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결정한 사례이다.

본 제품은 플라스틱 튜브(제3926호)와 고무 꼭지(제4014호)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일정량의 복용량을 공급하는 것은 두 요소가 함께 결합하여야만 가능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였다.

(2) 부동액 조제품

① 제품설명

기본적으로 에틸알코올과 물에 소량의 음이온 계면활성제·메칠 에틸 케톤·착색제 및 혼합(구성에 따라서는 모노 에틸렌글리콜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에 희석하여 방풍 유리의 서리 제거와 청소용으로 사용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제3820.00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본 물품은 음이온계면활성제의 효과로 방풍 유리의 청소용으로 사용하면 제3402호로 분류할 수 있고, 에틸알코올을 이용하여 서리 제거용(부동액)으로 사용하면 제3820호로 분류가 가능하다.

두 가지의 역할 중 어느 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였다.

(3)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

① 제품설명

가정형 전기식 제빵 기계(크기: 약 36cm×22cm×27cm, 중량: 약 5.9kg)이다. 탈착이 가능한 용기(“빵 굽는 팬, bread pan”)로 이루어진 하우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용기에서 빵 반죽을 위한 재료가 혼합되고 구워진다.

빵 굽는 팬은 탈착식의 반죽용 칼날을 위한 회전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반죽용 칼날은 기계 내부에 장착이 되면 전기모터와 연결하게 되어있다. 용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전열기는 반죽을 만들고, 반죽이 부풀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빵을 굽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하는 데 사용한다.

이 기계는 빵의 반죽과 굽는 용의 자동프로그램과 오로지 반죽만을 위한 자동프로그램이 있다. 오로지 반죽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다른

기계에서 구워져야 하므로 만들어진 반죽이 이 기계로부터 꺼내지게 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다목과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6.60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전기모터(전동기)를 장착한 빵 반죽기계는 중량이 약 5.9kg이므로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로 제8509호¹에, 전기식의 빵 굽는 기계는 제8516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기계 중에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없으므로,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²

이 경우는 형식상 제3호나목을 적용할 수 없기에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기에 이 통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1 제85류 주 제4호나목에 따라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의 중량이 20kg 이하인 것으로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기는 제8509호로 분류가 가능하다.

2 HS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따르면,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면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설한다.

(4) 차량용 긴급구호용 키트

① 제품설명

다음 물품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 물품이다.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운반용 가방 1개(제4202호)
- 자동차 배터리용 케이블 1세트(부스터 케이블)(제8544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60cm 길이의 안전벨트(제6307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접착테이프 1개(제5903호)
- 타이어 게이지 1개(제9026호)
- 헤드램프 1개(제8513호)
- 헤드램프용 배터리 3개(제8506호나 제8507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삼각 표지판 1개(제3926호)
-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담요 1개(제6301호)
- 케이블 타이 5개(플라스틱 클로저)(제3926호)
- 니트릴 장갑 1쌍(제4015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긴급용 방수 의류 1개(제3926호)

※ 이 위원회에서 개별 구성요소별로 품목번호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저자가 이해를 돕고자 ()안에 4단위 호를 표시하였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이 세트 물품은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026.20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쟁점은 우선 통칙 제3호에 해당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와 다음은 세트 물품이라면 어느 구성

요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세트 물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은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을 정할 수 없음에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타이어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기기”로 결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소매용 세트 물품이 아니라 하여 각각 분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하면 대략 9개호로 분류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바람직한 의견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상거래상 세트 물품과 이 표에서 정한 세트 물품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한 거래 관행을 반영하여 하나의 호로 분류하여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HS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5) 소프트한 하나의 손잡이가 달린 것 플라스틱 점프볼(jump ball)

① 제품설명

지름이 각각 45cm, 55cm, 66cm인 3종류로 제시한다. 사용자의 권장 최대중량은 45kg, 70kg, 90kg이다. 이 점프볼은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조정력과 균형감각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다.

② 사례해설

WCO HS 위원회에서 플라스틱 점프볼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므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과 제6호에 따라 제9506.91호로 결정한 사례이다.

이 점프볼은 “그 밖의 완구”로 제950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506호의 육체적 운동용품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물품은 90kg까지의 성인에 견디도록 설계된 점과 피트니스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조자(판매자)가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더 지지를 받게 되어 통칙 제1호와 통칙 제3호다목을 적용하여 마지막 호인 제9506호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른 재료로 된 복합물이 아니므로 형식상 제3호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4 결론

통칙 적용과 관련하여 4단위 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칙 제1호와 제3호나목이나 다목을 같이 적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통칙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통칙 제1호(호의 용어와 관련되는 부나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한다)를 기본으로 하되, 이 통칙 제1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용 통칙을 복수로 표기할 때 이해 당사자를 더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통일되지 않고 물품에 따라 달리하므로 실무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물품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므로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각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한 다섯 개 사례에서 (1), (2), (4)는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도 그 결과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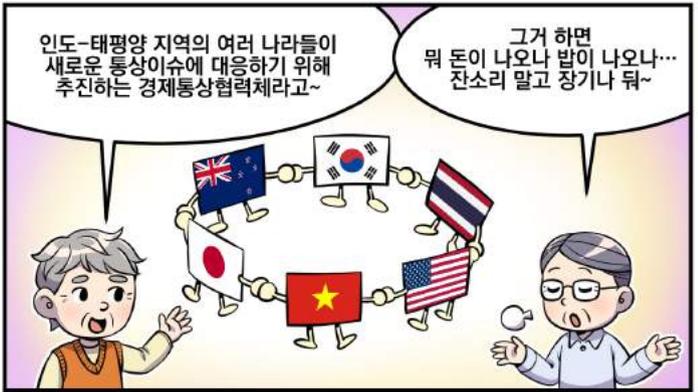
다만, (3)과 (5)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려야만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품목번호가 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또한, 실무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려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능한 본질적인 특성을 가릴 수 있는 경우에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에 기능(function)도 해당하는지 쟁점이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능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 의견이다.

HS 해설서에서 규정한 역할(role)에 기능이 해당하거나 포함되는지를 다룰 필요가 없이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주된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WCO HS 위원회 사례[예: 배터리 작동식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서도 기능에 따라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란?



ETA TRAD



F REPORT



해외통관애로

인도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개요와 활용방안

최영훈 |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인도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 개요와 활용방안



최영훈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관세관



1 품목분류 중요성

국제 간 교역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정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인 만큼 중요하다. 품목분류가 HS 국제협약¹으로 183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고, 통칙과 분류체계가 존재하지만, 나라마다 다르게 분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해외에서 겪는 아주 심각한 통관애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인도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HS 번호가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 막대한 추징금이 발생하거나, DRI(조세정보 총국)에서 관세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우리나라 물품에 대한 인도의 양허율은 85%로, HS 번호가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로 1988년 발효, 약 183개국이 가입

인도는 2020년 10월부터 CAROTAR²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심사를 강화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하는 FORM-I에는 세번 변경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도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세번

으로 분류될 때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나라와 교역에 있어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품목분류 분쟁 사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목분류가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A사의 경우, 4G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RU(Radio Unit)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수입하면서 HS 번호가 달라 장기간 인도 DRI³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품목분류 문제로 무려 2,60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이 발생하였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조사 내용은 이러하다. 인도 관세 당국이 동 물품을 HS 제8517.62호의 통신 기기로 분류하면서 약 2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A사는 동 물품이 HS 제8517.70호의 통신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현재 동 사건은 WCO HS 분쟁위원회에 안건으로 논의되어 A사의 의견대로 HS 제8517.70호로 결정되었다.

B사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한국에서 인도로 수입하면서 차량용 와이퍼용 모터에 대하여 인도 DRI와 이견으로 관세조사를 받고 있다. B사는 동 물품이 HS 제8501호로 전동기로 분류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 세관 당국은 이를 HS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주장하면서 관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면 한-인도 CEPA 혜택을 볼 수가 없다.

C사는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한국에서 인도로 수입하면서 품목분류가 관세당국과 맞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다.

2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의 약자로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정보 관련 추가정보(FORM-I)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제도(20.9.21시행)

3 Directorate of Revenue Intelligence(조세정보총국)으로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밀수 및 부정무역 조사기관으로 1957년 창립, 전국 11개 지부에서 약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HS 제9032호의 자동 제어기기로 분류한 데 비하여 인도는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DRI로부터 관세조사를 받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 HS 제8708호 차량용 부분품은 미양허 품목으로 협정세율 적용도 되지 않고, 기존 통관한 협정세율을 적용했던 수입건도 특혜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기준으로 추징조치를 내리고 있다.

3 웨스팅 하우스사의 계전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인도세관 당국에서 이처럼 차량용 모터나 ECU 등 일반 부품을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근거로는 2021년 3월 인도 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Westing House Saxby Farmer Ltd.(웨스트뱅크주 국영회사)는 철도부설 사업에 필요한 철도 신호용 계전기(Relay)를 수입하면서 HS 제8536호의 전기회로 계전기로 신고하였으나, 세관 당국에서는 이를 HS 제8608호의 철도용 차량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⁴.

실제 해당 대법원의 판결은 HS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통칙과 호의 용어 등에 대하여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인도 세관 당국은 판결문을 근거로 자동차용 좌석, 전동기 등 범용성 부분품을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결정이나 조사를 지속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⁵)는 일선 세관에서 동 판례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시하였다.⁶



4 Civil Appeal No. 37 of 2009

5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인도 중앙간접세위원회의 약자로 재무부 산하 직접세(CBDT)와 간접세 부서로 구분되고, 관세 업무는 CBIC에서 담당함

6 CBIC Instruction No.25/2022-Customs dated 3 October 2022

주요내용은 일선 세관 공무원들이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시 인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품목분류를 할 때는 HS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러한 CBIC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DRI에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품목분류의 실질적인 권한은 수입국 세관 당국에 있다.

인도도 관세행정 선진화 추진정책과 무역업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명 CAAR⁷라고 델리와 뭄바이 2개 부서를 두고 근무 인원은 델리지부에 11명, 뭄바이에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무처리 건수는 델리는 연간 약 40건, 뭄바이는 120-30건을 기록하고 있고 개소 이후 전체 4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업무처리 절차는 수입자, 통관사 또는 위임을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대상 물품은 수출입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세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물품이나 이의제기 중인 물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품목 분류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업체는 CAAR-1 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통관예정지 세관 한 곳을 지정하여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간은 90일로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고, 필요 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회시한다.

7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D RULING의 약자로 자세한 운영규정은 <https://old.cbic.gov.in/htdocs-cbec/aar/caar> 참고

사전회시 유효기간은 3년으로, 타사에서 받은 동종 동질 물품의 사전회시를 이용하여 통관할 때는 관할하는 세관장이 인정하면 효력이 유지된다. 사전회시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고등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는 품목 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점으로는 운영근거, 부서 설립근거가 WCO 개정교토협약에 있고, 대상 업무도 품목분류, 평가, 원산지, 과세가격으로 동일하며, 전담부서가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인도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사전 회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우리나라는 없지만(분석의 경우 3만원) 인도의 경우에는 신청건 당 1만루피(한화 약 16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지만, 신청자가 세심하게 검토한 후에 신청하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한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 때 15,000루피(한화약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심사결과 유예제도도 인도는 90-120일 반면,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서 운영회를 통하여 결정하지만, 인도는 위원회 운영 근거가 없다.



5 시사점 및 유의사항

지난 2023년 7월 28일 필자는 CAAR 델리 지부를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용 실적에 대하여 알아보니 최근 한 개 업체가 2건을 신청한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동 회사를 통하여 알아보니 2건을 신청했지만 1건은 원안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다른 1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이의신청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알아보니 품목분류 사전회시 경험도 없었고, CAAR 기관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델리 이외의 기업을 통하여 알아본 바,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는 업체도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에서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통관에서 중요한 업무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인도 세관의 심사 관행이다. 수입자에 대한 자율신고(SELF ASSESSMENT)를 중시하여, 기존 관행대로 통관한다든가, 세관에서 정정이나 변경 사항이 없다고 해서 수입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올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수입국 세관 당국의 결정대로 과세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거나 유사 세번 간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받고 통관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에 관세관으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느꼈던 우리나라 세관과 인도세관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업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기업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에서 불편한 제도가 있으면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한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정부와 세관공무원의 관점이 비중이 높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관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세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무결성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소한 오류가 있다면 해당 전체를 보류하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본다.

인도의 엄격한 통관환경에서 안정적인 교역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TA TRAD



REPORT



FTA 100% 활용하기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민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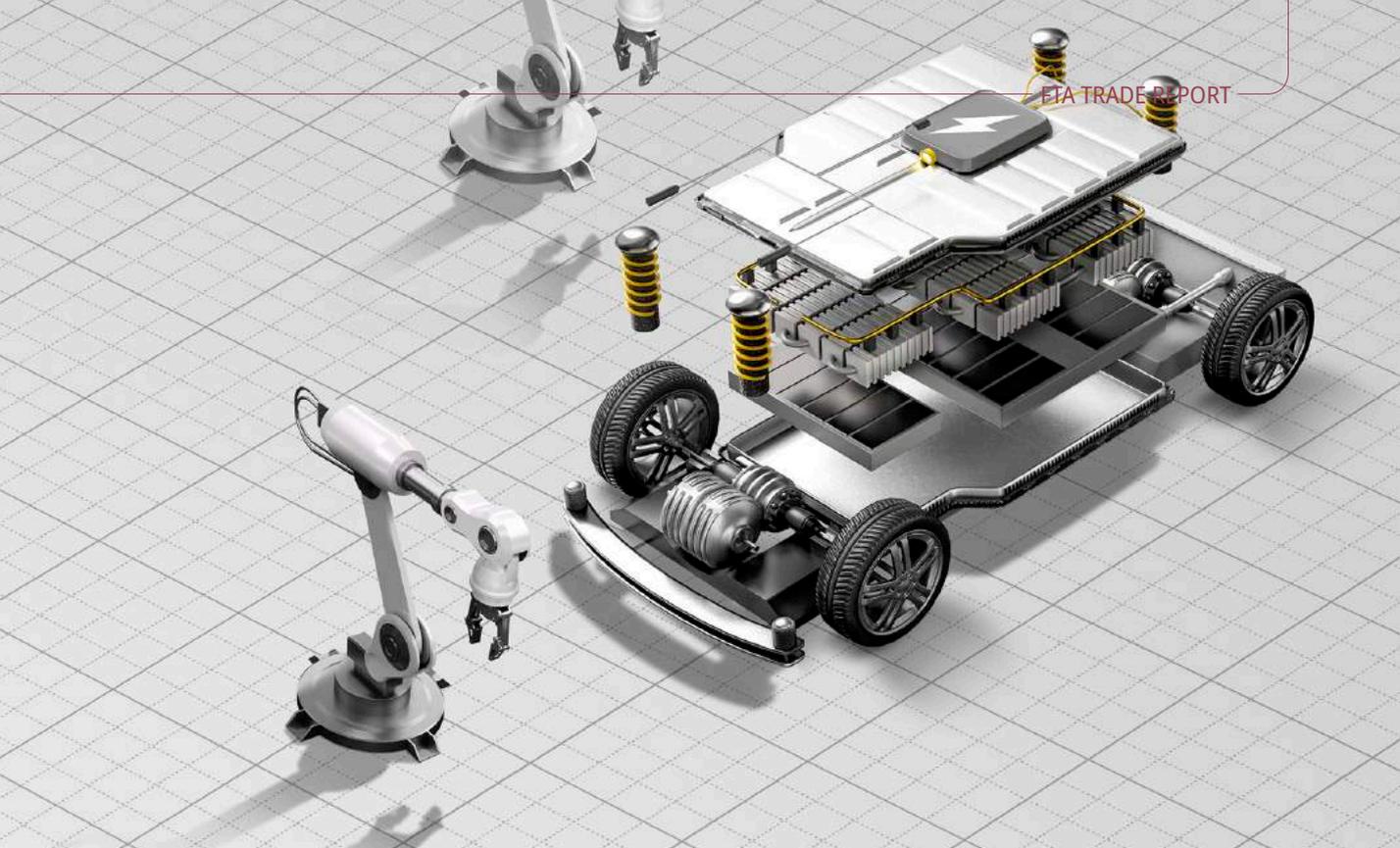
1 분쟁 배경 및 경과

USMCA 발효 전후(2020년 7월 1일 발효)로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이하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 시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역내산 인정 여부를 두고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2020년 6월 캐나다 공무원은 USMCA 제4장 부속서 4-B의 부록(이하 자동차 부록)²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요건과 RVC 계산 방식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

미국측 담당 공무원은 적용 가능한 RVC 산정 방식에 따라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 하면 자동차의 RVC 계산 시 비원산지 재료의

1 김민성. 2023.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하여 작성
2 USMCA의 제4장 원산지 규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1) 원산지와 관련된 일반 기준, (2) 부속서 4-B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3) 세번 87.01~87.08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인 부속서 4-B의 부록: 자동차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Appendix: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utomotive Goods)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에 해당 핵심부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롤업(roll-up) 조항³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미국 관세청(CBP)이 자동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USMCA 원산지 규정 이행과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핵심부품의 RVC 계산과 자동차의 RVC 계산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차의 RVC 산정 시

핵심부품의 원산지 요건에 따른 계산 결과에는 롤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3국 간에 비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된 해석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2020년 12월 미국 정부는 대체 단계별 준비제도 (ASR: Alternative Staging Regime)⁴ 승인서를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송부하였다.

3 롤업 원칙은 (1)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생산된 중간 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2) 해당 재료가 최종 제품에 사용될 때 해당 재료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여 해당 재료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ASR은 자동차 부록 제8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만족한 승용차 및 경형 트럭 생산자에 대해 관련 원산지 규정의 이행 시기를 추가적으로 2년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승인서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의 RVC와 핵심부품의 RVC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할 경우만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의 이행 의무를 추가적으로 2년 연기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8월 멕시코가 본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여 9월에 협회가 개최되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2022년 1월 멕시코는 ASR 승인서에 반영된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미국의 해석과 적용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상품에 관한 정의의 △롤업 조항 △자동차 부록 제3조에 따른 핵심부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 자동차의 RVC 및

핵심부품의 RVC 계산 간의 관계 △ASR 승인 요건 등과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2023년 1월에 최종 패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표 1]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21.08.20	멕시코가 미국에 협의를 요청
2021.08.26	캐나다가 협의 참여 의사를 통보
2021.09.24	협의 개최, 합의 도출에 실패
2022.01.06	멕시코가 패널 설치를 요청
2022.01.13	캐나다가 제소국으로 분쟁 참여 의사를 통보
2022.03.22	패널 위원 선임에 합의
2022.12.14	최종 패널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회람

자료: 김민성(2023), pp.5~6

2 핵심 쟁점 및 패널 판정

가. 협정 이행의 유예 기간 승인 관련 쟁점 및 판정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ASR 승인을 조건으로 ASR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의 RVC와 핵심부품의 RVC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 부록 제8조⁵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이 아닌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SR 적용 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ASR 승인을 위한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⁶ 및 제3항⁷, 통일시행규칙 19(4)⁸를 넘어선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관련 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이 ASR 승인을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요건을 자동차 생산업체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의 요건 목록이 대체적으로 자동차 및 트럭과 관련된 4가지 주요 원산지 규정(자동차 또는 트럭의 RVC,

5 자동차 부록 제8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 자동차 생산자에 대해 협정 이행을 추가적으로 2년 유예해 주는 ASR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총족 요건, 수량, 연장 및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 제8조 제2항은 승용차 또는 경형 트럭이 ASR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4가지 요건은 △자동차의 RVC는 순원가법 기준 62.5%,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75% 이상이어야 함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록 부표 A.1(제8507.60호의 배터리 제외)의 RVC는 순원가법 기준 62.5%, 거래가격법 기준 72.5% 이상이어야 하며,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순원가법 기준 75%, 거래가격법 기준 85%가 되어야 함. △자동차 부록 제6조(철강 및 알루미늄)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동차 부록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노동가치비율 요건은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에 대해 5% 이상 감소 불허이다.

7 제8조 제3항은 ASR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또는 경형 트럭의 수량에 관한 내용으로 ASR 대상 차량 수량은 생산자의 자동차 생산량(협정 발효 전 12개월 동안 생산자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 또는 협정 발효 전 36개월 동안의 평균 생산량 중 더 큰 값)의 10%이며, 생산자의 계획서에 따라 증가가 가능하고 규정하고 있다.

8 통일시행규칙 19(4)는 ASR 적격 차량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총족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총족 요건은 △RVC는 순원가법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부표 A.1에 명시된 부품(제8507.60호에 해당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외)의 경우, RVC는 순원가법 기준 62.5%, 거래가격법 기준 72.5%임. 제8507.60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제8507.60호 내에서 세번변경 또는 6단위 세번변경임. △가격기준으로 자동차 생산자의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의 최소 70%는 부속서 I(Schedule I)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 요건은 ASR 승인에 따라 면제되는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노동가치비율이 최소 25%이상 이어야 하며, 고임금 재료 및 제조 비용이 최소 10% 이상, 고임금 기술 비용이 10% 이하, 고임금 조립 비용이 5% 이하로 구성되어야 함이다.

상품의 RVC, 철강 및 알루미늄 요건, 노동가치 비율 요건)을 따르고 있으며 광범위한 맥락에서 봤을 때 제8조 제2항의 목록이 열거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통일시행규칙 19(4)가 자동차 부록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구를 통합하여 ASR 대상 차량이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시행규칙 19(4)는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이 열거적 규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ASR 승인을 위해 자동차 부록 제8조 제2항과 통일시행규칙 19(4)에서 열거한 요건 외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나. 자동차 및 핵심부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 관련 쟁점 및 판정

본 분쟁의 핵심사안으로 협정 제4.5조(역내가치 포함비율)와 자동차 부록 제3조(승용차, 경형 트럭 및 그 부분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의 해석 차이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 핵심부품의 RVC 계산과 자동차의 RVC 계산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즉 자동차의 RVC 계산 시 자동차 부록 제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핵심부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롤업 조항(협정 제4.5조 제4항⁹)의 적용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었다.¹⁰

자동차 부록 제3조 제8항 및 제9항은 부표 A.2¹¹에 나열된 핵심부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산 방법으로 자동차 생산업체가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9 협정 제4.5조 제4항은 제 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품의 RVC를 산정할 때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예를 들면 RVC 75% 및 다른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자동차 엔진의 가치가 400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25%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100이다. 자동차의 RVC 계산 시 롤업 조항이 적용되면 엔진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100을 포함하여 엔진의 가치 400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11 부표 A.2의 핵심부품은 엔진, 변속기(transmission), 차체와 섀시, 차축, 현가 장치(suspension system), 조향 장치(steering system), 고급 배터리이며, 1열은 7개의 핵심부품, 2열은 각 핵심부품의 구성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음.

제8항의 (a)는 일반적인 RVC 산정 방식인 반면 제8항 (b), 제9항 (a), (b)는 부표 A.2의 핵심부품에만 적용되는 USMCA의 특별한 RVC 산정 방식이다(표2 참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핵심부품이 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때 롤업 조항이 적용되어 핵심부품의 가치를 100% 역내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핵심부품의 RVC 계산과 자동차의 RVC 계산 간에는 관련이 없으며, 자동차 부록 제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핵심부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자동차의 RVC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자동차 부록 제3조가 자동차의 RVC요건(제3조 제1항 내지 제6항)과 핵심부품의 원산지 요건(제3조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

즉 자동차의 RVC는 제3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계산되고, 자동차의 RVC 계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RVC는 제3조 제8항 또는 제9항이 아닌 제2항에 따라야 하며, 제3조 제6항에 의해 협정 제4.5조의 RVC에 관한 표준 방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자동차 부록 제3조 제8항과 제9항의 방법은 핵심부품에 대한 별도의 원산지 요건(origination requirement)으로 핵심부품의 RVC 계산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표2 참고).



[표 2] 자동차 부록 제3조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항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의 RVC 요건 :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RVC 75% 충족
제2항	부표 A.1의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된 핵심부품의 RVC 요건 :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RVC 75%, 거래가격법 기준 RVC 85% 충족
제3항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된 부표 A.1의 핵심부품은 제2항의 RVC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원산지 지위를 획득함.
제4항	부표 B.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된 주요 부품의 RVC 요건 :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RVC 70%, 거래가격법 기준 RVC 80% 충족
제5항	부표 C.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된 보조 부품의 RVC 요건 :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RVC 65%, 거래가격법 기준 RVC 75% 충족
제6항	제1항~제5항의 RVC 계산을 위해 협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조를 적용
제7항	승용차 및 경형 트럭에 사용된 부표 A.2의 1열 핵심부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 승용차 및 경형 트럭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으며, 해당 부품은 제2항의 RVC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함.
제8항	부표 A.2의 제1열 핵심부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방법(옵션1) (a) 제1열에 나열된 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b) 제2열에 나열된 구성요소 중 제1열에 나열된 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구성요소의 가치
제9항	부표 A.2의 제1열 핵심부품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방법(옵션2) 제1열의 모든 부품을 단일 부품 즉 슈퍼코어 부품(super core part)으로 간주 (a) 제1열에 나열된 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합 (b) 제1열에 나열된 부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열의 비원산지 구성요소의 합
제10항	부표 A.2에 나열된 첨단 기술 차량의 부분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변경, 기술 발전에 따른 부표 A.2의 변경 논의가 가능함.

자료: 김민성(2023), pp.8~9

패널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주장과 동일하게 핵심부품이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원산지 재료에 해당되어 자동차의 RVC 계산 시 롤업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협정 제4.5조 제4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협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자동차 부록 제3조에서 규정한 상품에 대해 협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해 제3조에서 동 조항에 대한 문안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제3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핵심부품이 동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패널은 협정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적 정의)의 제5조 (일반적 정의)에서 원산지(originating)는 제4장(원산지 규정) 또는 제6장(섬유 및 의류 제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협정 제4.1조에서는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또는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는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로 정의하였다.

패널은 자동차 부록 제3조 전체에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와 USMCA 협정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산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협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의 주장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거나 원산지와는 완전히 다른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도 패널은 자동차 부록 제3조가 (i) 자동차의 RVC 및 해당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의 RVC 계산과 (ii) 별도의 핵심부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RVC 계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3가지 근거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패널은 미국이 협정 발효 후 상반된 견해를 취하기 전까지 협상 기간 및 협정 서명 전후로 미국 공무원들이 자동차 업계 대표들과 캐나다 협상 대표에게 취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패널은 미국이 자동차 부록 제8조와 협정 제4.5조 및 자동차 부록 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여 멕시코와 캐나다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에서 승소하였다.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NAFTA 재협상의 배경 및 목표,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패널의 판정 결과와 영향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미국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임금 상승 제한, 무역 적자 심화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의 개정은 핵심 쟁점 사항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멕시코산 및 역외산 자동차 부품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해결하고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생산과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USTR은 USMCA의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5년 동안 340억 달러의 신규 투자, 매년 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신규 구매, 76,000개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쟁 과정에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해석처럼 유연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동차 부품의 RVC가 상당히 부풀려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들이 북미산 부품의 투자와 생산 대신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의 제3국으로부터 중요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주장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북미산 부품 비중이 8~33%까지 감소한다는 미 국제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연구 결과와 북미산 부품 비중이 약 10% 감소한다는 한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미국상공회의소, 수입 자동차 협회(Autos Drive America), 포드, GM 등의 자동차 관련 업체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판정 결과의 신속한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판매를 위해 수출입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RVC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져 USMCA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가 보다 수월해졌다.

더불어 자동차 부록 제3조 제9항에 따라 핵심 부품들을 하나의 부품(super-core parts)으로 간주할 경우 저부가가치 핵심 부품의 역외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편의 증가와 생산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2016년부터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아 자동차는 ASR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번 패널 판정으로 역외산 부품 조달을 보다 신속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패널 판정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패널 판정에 따른 해결책 모색과 이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분쟁 당사국은 USMCA 제31.18조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패널 판정에 따른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수용, 분쟁 당사국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 제공 등의 해결책에 합의해야 한다.

2023년 1월 미국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으로 인해 북미산 자동차 부품의 비중, 투자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향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미국 정부는 분쟁의 긍정적인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 발표하고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¹²

2023년 10월 기준 USMCA 제31장(분쟁 해결)에 따라 총 6건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중 3건은 종결, 3건은 현재 패널 검토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은 3번째 분쟁 사례로 사안의 복잡성과 중요성 등으로 인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선 두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패널 검토가 완료된 총 3개의 분쟁 해결 중 분쟁

12 USTR. 2023. 2023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Report. p. 13.



당사국 간에 공식적인 해결책을 합의한 경우는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제기한 태양광 관련 수입 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 사례뿐이다.

본 분쟁에서 캐나다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2022년 7월 패널 판정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¹³

반면 캐나다의 유제품 TRQ 할당 분쟁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미국이 패널 구성을 요청하여 미국이 승소하였으나, 미국은 캐나다의 시정 조치와 제도의 일부 조치가 여전히 USMCA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2023년 1월 본 사안에 대해 또다시 패널 구성을 요청하여 현재 패널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¹⁴

본 분쟁 사례는 패널 판정이 분쟁 당사국 중 어떤 국가에게 유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해결책에 도출하는데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¹⁵

더욱이 최근 미국이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의 핵심 분야인 만큼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바 패널 판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13 본 합의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rade in Solar Product)는 미국이 캐나다의 태양광 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폐하였지만, 캐나다의 수입품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를 훼손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14 USTR. 2023. 2023 Trade Enforcement Priorities Report. pp, 11~12.

15 Torres Trade Law, Update on USMCA Dispute Panel Activit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860a8cc-c8be-4096-99b1-5147514db2dc>



[표 3] USMCA 제31장에 따른 분쟁 사례(2023.10월 기준)

구분	제소국	피제소국	패널 구성 요청일	최종 보고서 회람일	패널 판정
유제품 TRQ 할당 조치 (CDA-USA-2021-31-01)	미국	캐나다	2021.05.25	2021.12.20	미국 승소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USA-CDA-2021-31-01)	캐나다	미국	2021.06.08	2022.02.15	캐나다 승소
자동차 원산지 규정 (USA-MEX-2022-31-01)	캐나다, 멕시코	미국	2022.01.06	2023.01.11	멕시코, 캐나다 승소
유제품 TRQ 할당 조치 (USA-CDA-2023-31-01)	미국	캐나다	2023.01.31	진행 중	진행 중
멕시코의 GM 옥수수 수입 금지 조치 (MEX-USA-2023-31-01)	미국	멕시코	2023.08.17	진행 중	진행 중
산 마르틴 광산 관련 노동 신속 대응 패널 (MEX-USA-2023-31A-01)	미국	멕시코	2023.08.22	진행 중	진행 중

자료: CUSMA Secretariat, CUSMA Dispute,

<https://can-mex-usa-sec.org/secretariat/disputes-litges-controversias.aspx?lang=eng> (검색일: 2023. 10. 27)

ETA TRAD



REPORT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전자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태윤희 | 태관세사무소 관세사

전기자전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태윤희
태관세사무소
관세사



1 자전거 산업의 변화와 발전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자전거 등 친환경 개인용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으며 운동 효과도 있는 '자전거'가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꼽힌다. 더 나아가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E-bike)'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두 개의 바퀴가 앞뒤에 달려있고 발로 돌리는 페달과 뒷바퀴가 체인으로 연결된 형태의 이륜자전거를 의미한다.¹

바퀴는 흔히 2개이며 1개짜리나 3개짜리도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자전거 형태에 전동기를 부착하여 전동기의 힘으로 인력을 보조해 주는 "전기자전거"가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교하여 전동기의 힘과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①페달(손 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구를 말한다.²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으로 레버를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 형과 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작동되는 파스(페달보조)형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개인용 이동 수단 중 최근 주목받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품목분류(HS Classification)와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해설하고자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참고
2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관세율표에서의 HS분류 및 분류기준 해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분류되는 HS 제8712호가 아닌 '제8711호'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 그 밖의 자전거[Bicycles and other cycles (including delivery tricycles), not motorised]가 HS 제8712호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 모터를 부착하지 않은 사이클, 즉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갖춘 페달 작동식의 차량을 분류한다(예: 어린이용의 것을 포함하는 이륜 자전거·삼륜 자전거·사륜 자전거)'고 설명하고 있다.

제8711호에는 보통의 자전거 이외에 배달용 삼륜 자전거, 2인승 자전거 등 여러 가지 특수 형식인 것도 포함한다. 경기용의 자전거(Racing bicycles)는 제8712.00-1000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삼륜 자전거(Tricycles)는 제8712.00-9020호에 분류된다.

다만 어린이용 완구 자전거는 제9503호에 분류

되며, 유원지용으로만 적합한 특수 자전거는 제9508호에 분류된다.

제8712호에서 제외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모터를 부착하지 않은 사이클로 제8711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HS 제8711호에는 '모페드(moped)를 포함한 모터사이클과 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side-car)³가 제8711호에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 스쿠터(motor-scooter); 내장된(built-in) 엔진과 페달 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영문 품명: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품목분류		품명	Description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Motorcycles (including mopeds) and cycles fitted with an auxiliary motor, with or without side-cars; side-cars.
8711	60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With electric motor for propulsion
8711.60	1000	모터사이클	Motor cycles
	9000	기타	Other

제8711호에서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모터사이클이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전기자전거는 제8711.60-9000호에 분류된다.



3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전기자전거가 분류되는 HS 제8711.60호에 대한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①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인 'CTH or MC5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4단위(즉, Tariff heading)와 전기자전거의 HS code

FTA	원산지결정기준	
한-E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CTH or MC 50%
한-인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and RVC 40%
한-베트남		
한-아세안	45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5%
RCEP	4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RVC 40%

4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들의 가치가 제품인 전기자전거의 공장도가격(EXW; Ex-Works Price) 대비 50% 이하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즉, 한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CTH and RVC 4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4단위(즉, Tariff heading)와 전기자전거의 HS code 4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0%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 45%'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5%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RVC40%'를 해설하면, 전기자전거의 FOB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비원산지재료를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 가격 대비 40% 이상이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포장·취급이나 운송상의 요구·편의 같은 이유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핸드그립, Spoke 프로텍터, Rim, 스탠드, 전·후면 반사경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한 전 부품이 미조립 분해 상태로 수입되어, 별도의 추가 가공 없이 조립하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완성품인 자전거로 품목분류 된다.⁴

이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하는 물품'으로 통칙 제2호 가목⁵에 따르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 역시 미조립 분해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하여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4 품목분류사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79, 시행일자 2004-11-05 참고(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5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TA TRAD



FTA REPORT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RCEP 원산지국가 결정하기 -

구본현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가 편리한 FTA-PASS

- RCEP 원산지국가 결정하기 -



구본현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한국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주임/원산지관리사

FTA PASS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는 사용자가 원산지정보만 입력하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22년 발효한 다자간 FTA인 RCEP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을 30%를 아우르는 거대경제권이다. 다자간 국가가 가입한 만큼 RCEP 협정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실익을 누릴 수 있는데, 본편에서는 RCEP의 민감품목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실제 화면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1. RCEP이란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FTA로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체결 FTA 중에서는 가장 큰 경제영토를 가진다.

RCEP 회원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이며, 2022년 1월 1일 중국, 일본 등 10개국이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되었으며, 일본과의 첫 FTA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RCEP은 타협정과 다르게 관세 차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RCEP 회원국 내에서도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RCEP 체결국가



예를 들어 C국이 Z물품을 A국에서 수입 시 10%, B국에서 수입 시 2%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A국산 물품이 B국을 단순 경유하여 C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8%의 관세절감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원산지국가 결정하기-1

RCEP은 회원국 내에서 원산지 국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세율이 유리한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수출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A국가 기업이 B국가로 직접 수출하는 것보다, 먼저 C국가로 보낸 다음 B국가로 우회수출하면 관세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FTA-PASS에서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1.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먼저 분류한다.

민감품목은 수입당사국이 협정 부속서1 부록에 규정한 품목이며, 우리나라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만 운영중이다.



[그림 2] 민감품목 조회를 위한 RCEP 사전설정 탭

HS코드

원산지 판정용 한-중 FTA중명서(기권) 신 RCEP 사전설정

물품번호 물품명 가공단계 완제품 관세사명/대상수입국가 전체

적용기간 2021-12-31 2030-12-31 [5년 / 10년 / 올해] 관세차별구분 전체 최소공정/이상/수행여부 미등록 민감품목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가공단계	국가	시작년	종료년	관세차별구분	최소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A-087-01	민감품목1-PE-DV이상	A-087-01	완제품				공통양허종류	
<input type="checkbox"/> A-087-02	민감품목2-PE-DV이하	A-087-02	완제품				공통양허종류	
<input type="checkbox"/> A-087-03	민감품목3-PSR-DV이상	A-087-03	완제품				공통양허종류	

물품번호 A-087-01

물품명 민감품목1-PE-DV이상

규격 A-087-01

HS코드 메뉴의 ①RCEP 사전설정 탭에서 ②미등록 민감물품을 체크하여 검색하면 물품정보에 등록된 완제품(또는 중간재) 중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능성 있는 물품의 세번을 RCEP 민감품목 조회 메뉴에서 ③검색하여 관련 세번을 검색한다.

고객사가 수입할 때 사용하는 세번을 확인하여 민감품목으로 ④분류한 다음 원산지판정을 수행하여 원산지국가를 확인한다.

[그림 3] RCEP 민감품목 조회화면

RCEP 민감품목 조회

국가 전체 3 세번 852580 물품명 발송여부 전체 검색

국가명	세번	물품명	시행기간	종료기간	발효여부	비고
1	베트남 8525.80-10	웹 카메라	2022	9999	발효	베트남 / 1년차부터 계속 / 발효
2	베트남 8525.80-40	텔레비전 카메라	2022	9999	발효	베트남 / 1년차부터 계속 / 발효

보기 1 - 2 / 2

[그림 4] 민감품목 등록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HS코드' (HS Code)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tabs for '원산지 판정용' (Origin Determination), '한-중 FTA증명서(기판) 신청용' (Korea-China FTA Certificate Application), and 'RCEP 사전설정' (RCEP Pre-configuration). Below these are search filters for '물품번호' (Goods No.), '물품명' (Goods Name), '가공단계' (Processing Stage), and '관세차별대상(수입)국가' (Tariff Preference Country). A table lists 12 goods with columns for '종류' (Type), '물품번호' (Goods No.), '물품명' (Goods Name), '규격' (Specification), '가공단계' (Processing Stage), '국가' (Country), '시적년' (Effective Year), '관세차별구분' (Tariff Preference Category), and '최소공정' (Minimum Processing). The first item, '민감품목1-PE-DV이상' (Sensitive Goods 1-PE-DV or above), is selected. To the right, a detailed view of this item is shown, including its '물품번호' (A-087-01), '물품명' (민감품목1-PE-DV이상), '규격' (A-087-01), '가공단계' (원재품), and '관세차별대상(수입)국가' (Viet Nam). A red circle highlights the '관세차별대상(수입)국가' dropdown m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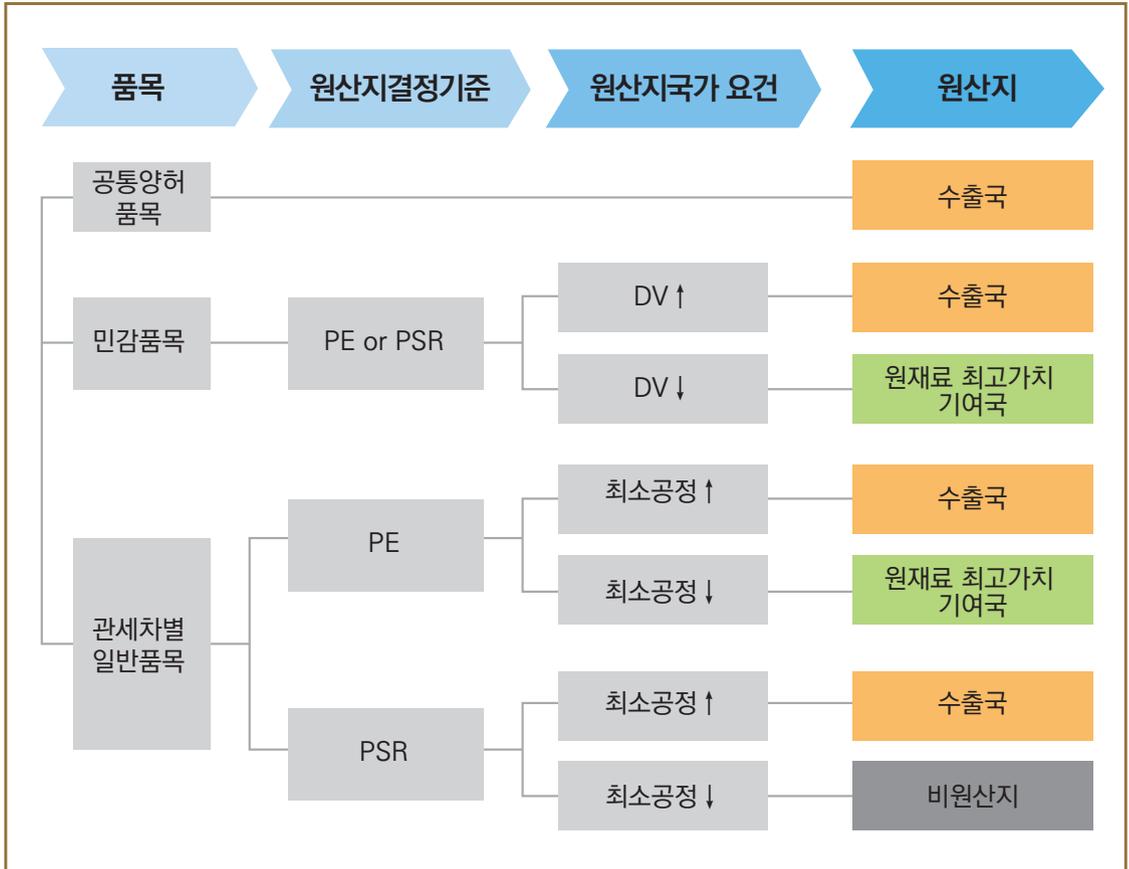
3. 원산지국가 결정하기-2

3. RCEP 민감품목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일괄판정 메뉴에서 원산지판정 수행하여 원산지국가를 바로 확인한다.

RCEP 사전설정 탭에서 관세차별구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전부 공통양허품목으로 자동분류되며 원산지판정 수행 후 원산지국가가 결정된다.



[그림 5] 관세청 RCEP 이행지침 중 관세차별 적용결과표



4. 마무리하며

FTA-PASS는 중소·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무료 프로그램이며, 원격지원서비스, 전화지원 서비스, 현장방문 서비스, HS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FTA-PASS 소식지는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 FTA-PASS 소식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 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학습 및 실습을 마친 후 활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ETA TRAD



F REPORT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위험요소 극복방안

이재현 | 더현관세사무소 관세사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및 위험요소 극복방안



이재현
더현관세사무소
관세사

대한민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인도네시아까지 총 59개 국가이며, 앞으로도 FTA 협정 체결국가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변화하는 FTA 협정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잘 이용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기회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 기업 중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련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자(관세사 또는 원산지 관리사 등)를 두고 있어 변화하는 상황을 체크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위와 같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수시로 변화하는 FTA 상황을 적절히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하 수출 및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협정적용 배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서언

원산지 관리(Origin Management)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식별, 관리하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원산지는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나타내며, 국제무역 및 관세 관련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관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역할을 가진다.

가. 원산지 식별: 제품이나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산지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노동, 생산 시설, 기술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나. 관세 적용: 원산지는 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다. 원산지 조건 : 제품의 원산지가 잘못 표시되거나 실제 생산지와 다른 경우,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불법 무역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

라. 소비자 신뢰: 소비자는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통해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 원산지 관리는 수출입업체, 정부기관, 관세당국,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국제무역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관리하여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수출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

1. 품목분류(HS CODE) 확인

FTA 활용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이다. HS Code는 앞에서부터 2단위는 '류(Chapter)', 4단위는 '호(Heading)', 6단위는 '소호(Sub-Heading)'라고 부르며, 앞의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분류로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한 품목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표 1] HS 분류체계

분류체계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	부호(세번)	
품목번호	2단위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¹
법적지위	HS 협약(회원국의 일치 의무)			회원국에게 세분류 위임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HS 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며, 동일 물품들에서 HS코드 불일치로 해당국가에서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관세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HSK 분류에 따른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른 HS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08.04.)'에 따른 증빙서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1 대한민국은 HS 분류를 10단위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라 부름.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0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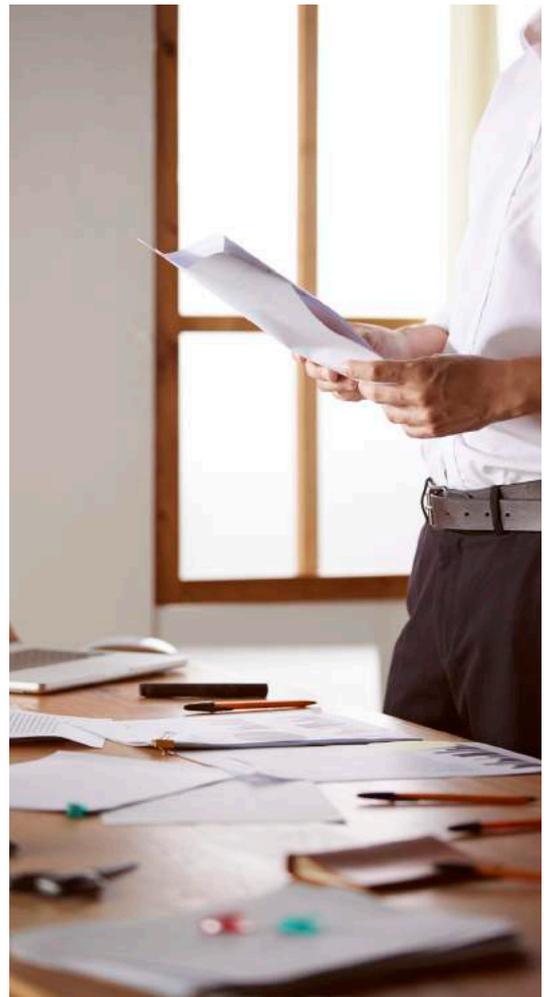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기 서류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하면 동일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최초 C/O 발급 번호만 기재하면 그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할 수 있다.

2. 원산지판정

원산지 판정은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서, 제품의 생산 지역 및 조립과 가공 등에 따라 결정이 된다.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통하여 물품을 수출할 국가의 개별 FTA 협정 내 원산지 결정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확인 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Made in KOREA)인을 입증하는 원산지확인서² 및 원산지소명서³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확인서 : 물품 판매자가 수출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에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

3 원산지소명서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

[표 2]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 방법

홈페이지 활용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FTA 포털 → FTA 일반현황 → FTA 협정문 → 협정문 “원산지기준” 확인 → HS CODE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https://www.fta.go.kr/main/)	FTA KOREA 포털 → 참고자료 → 협정문 정보 → 해당 FTA 협정문 선택 → 협정문 원산지 부분 → HS CODE 확인
관세청 원산지관리 시스템 (https://www.ftapass.or.kr/psr/view.do)	원산지결정기준 → 기준년도 / 적용협정 / HS 코드(6단위) 입력하여 확인

3. 원산지 증빙서류

수출물품의 HS코드 검토 결과, 특혜세율 적용이 업체에 더 효율적이면서 동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다고 판단된다면 해외거래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다.

‘기관발급’의 경우는 관세청(유니패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율발급’의 경우는 협정 별로 작성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업 인보이스내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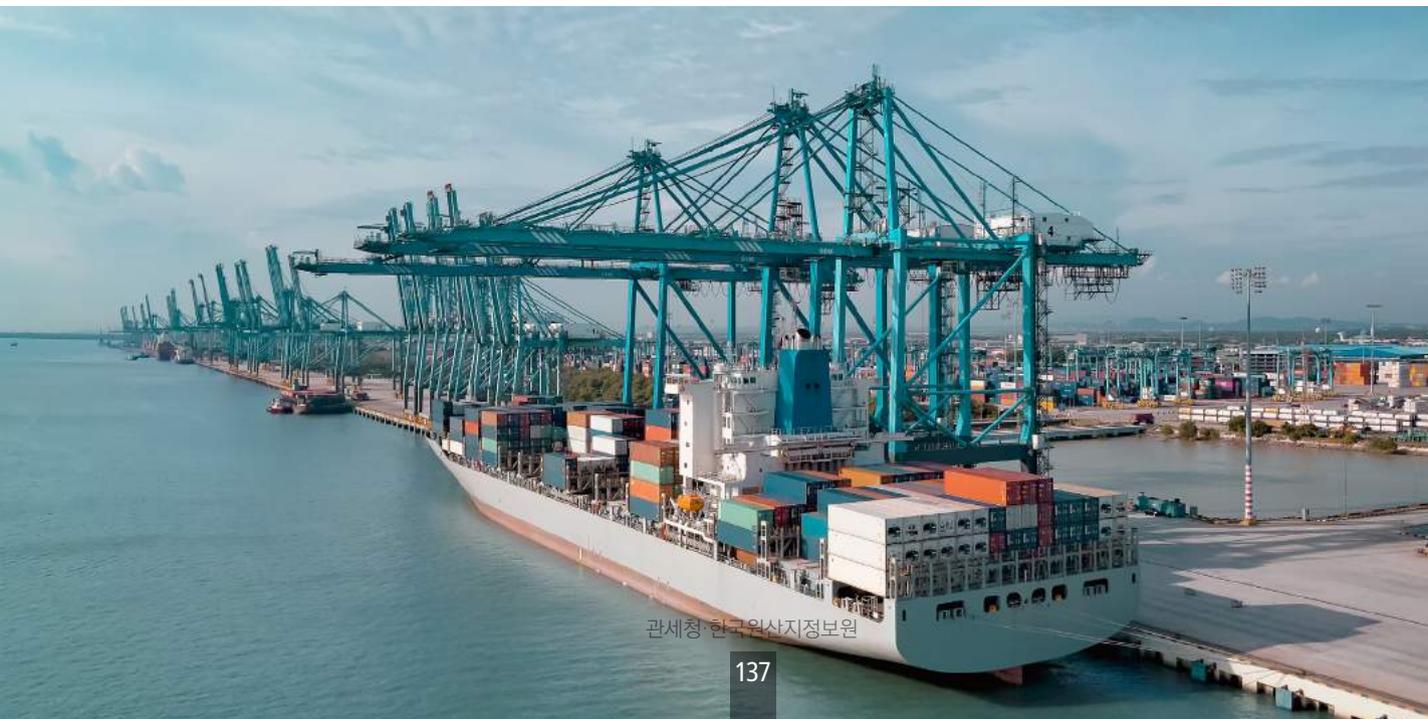
협정 별 작성 방법에 따르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FTA 특혜 관세를 배제하거나 사후 검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 전 반드시 관련 협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경우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더라도 원산지 사후심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표 3] 원산지 입증 증빙서류⁴

구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	실무 (원산지 입증서류)
수출자	① 원산지증명서 ② 수출신고필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③ 수출거래 계약서 ④ 물품 구입 관련 서류 ⑤ 출납, 재고관리대장 ⑥ 원산지확인서	1. 선적서류(BL, INVOICE) 2. 자재명세서(BOM) 3. 원산지(포괄)확인서 4. 제조공정도 5. 원산지소명서 6. 원재료 거래명세서
생산자	① 원산지확인서 ②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③ 물품공급계약서 ④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제공한 서류 ⑤ 물품 생산 및 원재료 구입 관련 증빙자료 ⑦ 원가예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⑦ 출납, 재고관리대장	(또는 구매 세금계산서) 7. 원가명세서 8. 수출신고필증 9.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문 10. 거래계약서 11. 기타 증빙서류 (사유서 등)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상기 표의 '실무(원산지입증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서류 중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일부 서류만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물품 및 협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3 수입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항

1. FTA 협정신청서 작성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FTA 협정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물품 선적 이후 발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적절한지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특혜세율을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 제출이

무작위로 선별되기 때문에 일부는 서류 제출 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FTA 검증은 사후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해당 전문가(관세사 등)를 통하여 해당 수입 건의 특혜세율 적용이 적절한지 사전에 검토하여 사후의 리스크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원산지증명서 오류 및 협정세율 배제 사례

오류 내용	실무(예)
물품명 및 모델규격 불일치	Invoice 품명 ≠ 원산지증명서 품명
HS 코드 불일치	수입신고서 HS ≠ 원산지증명서 HS
인보이스 번호 불일치	Invoice No. ≠ 원산지증명서 Invo No.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체계 오류	협정별 ⁵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불일치
원산지증명서 상 총중량 불일치	B/L 총중량 ≠ 원산지증명서 총중량

5 한-EU, 한-EFTA, 한-영국 등 협정 별 나라에 따라 개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있음.

2. 원산지 증빙서류

수입자는 수입신고 관련서류(BL, Invoice, 운임 명세서, 거래계약서 등)와 원산지증명서(C/O)를 대조한 후 오류가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기업의 경우 상기 서류 검토와 더불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가 올바르게 발급된 것인지 거래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판정을 위한 자료(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등)를 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수출국의 재료비율), 직접운송원칙, 최종 생산국가 등의 정보를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최대한 준비하여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사후심사 대비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⁶⁾'가 발행하고, 수입자는 해당 서류를 통하여 FTA 협정 특혜를 적용받지만, 관세청(또는 세관)에서 협정관세 적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원산지에 관한 조사 대상(FTA 특례법 제17조)]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6 한-미 FTA 경우 수입자도 발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자, 생산자에게 발행 요청함.

우리나라 관세청도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원산지 사후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사후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불인정 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어 부족세액 및 가산세 납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표 5] 사후검증 방법

직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질의, 정보요구, 현장방문 조사
간접 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 적정성을 조사

4 협정관세 적용 제한 및 제재

수입물품에 관하여 원산지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세당국은 우선 국내조사(서면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조사의 경우 간접(세관 당국에 요청)조사와 직접조사(서면 및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의 조치를 이행한다.

1. 협정관세 적용 제한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차액의 세액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가산세 징수 포함)



[협정관세 적용제한(FTA 특례법 제35조) 대상]

1. 자료 미제출, 거짓 또는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2. 직접검증 결과 기한 내 미회신. 현지조사 미동의 또는 동의여부 미통보한 경우
3. 현지조사 시 원산지 확인 자료 접근 거부, 협정 관련 서류 미보관한 경우
4. 서면/현지 조사 결과 원산지가 상이, 제공자료로 원산지 판정이 곤란한 경우
5. 간접검증 결과 기한 내 미회신, 회신결과 원산지가 상이, 원산지 판정이 곤란한 경우
6.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개별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조사자의 부도, 폐업,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가산세 징수

1. 부족세액 * 10% 상당하는 금액 (단, 부당한 방법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0% 금액)
2.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 이자율⁷

2. 원산지규정 위반 시 행정벌칙

관세당국은 업체가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하단의 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조치 이행 전 업체에게 '의견(이의제기)'⁸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7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업체는 조사 결과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관세당국은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내용을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 6] 원산지 규정 위반과 행정벌칙

근거규정	위반 유형	형벌 수준
FTA 특례법 제44조 1항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FTA 특례법 제44조 2항	1)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한 자 2)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재수출 면세물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6)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서류 발급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써 제2호,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벌금
FTA 특례법 제44조 3항	과실로 협정 및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3백만원 이하의 벌금
FTA 특례법 제46조 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FTA 특례법 제46조 2항	1) 승인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통보 받고 세액정정, 보정, 또는 수정신고 등을 불이행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벌규정 (FTA 특례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규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결어

수출입 통관 업무에서 볼 때, FTA는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담당하며, 수입기업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적용 검토로 볼 수 있으나, 통관 후 사후에 진행되는 FTA 검증관리 업무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더라도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공된 증빙 서류를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수입기업 역시 수출업체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중소 수출입기업 모두 원산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없이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ETA TRAD



FTA REPORT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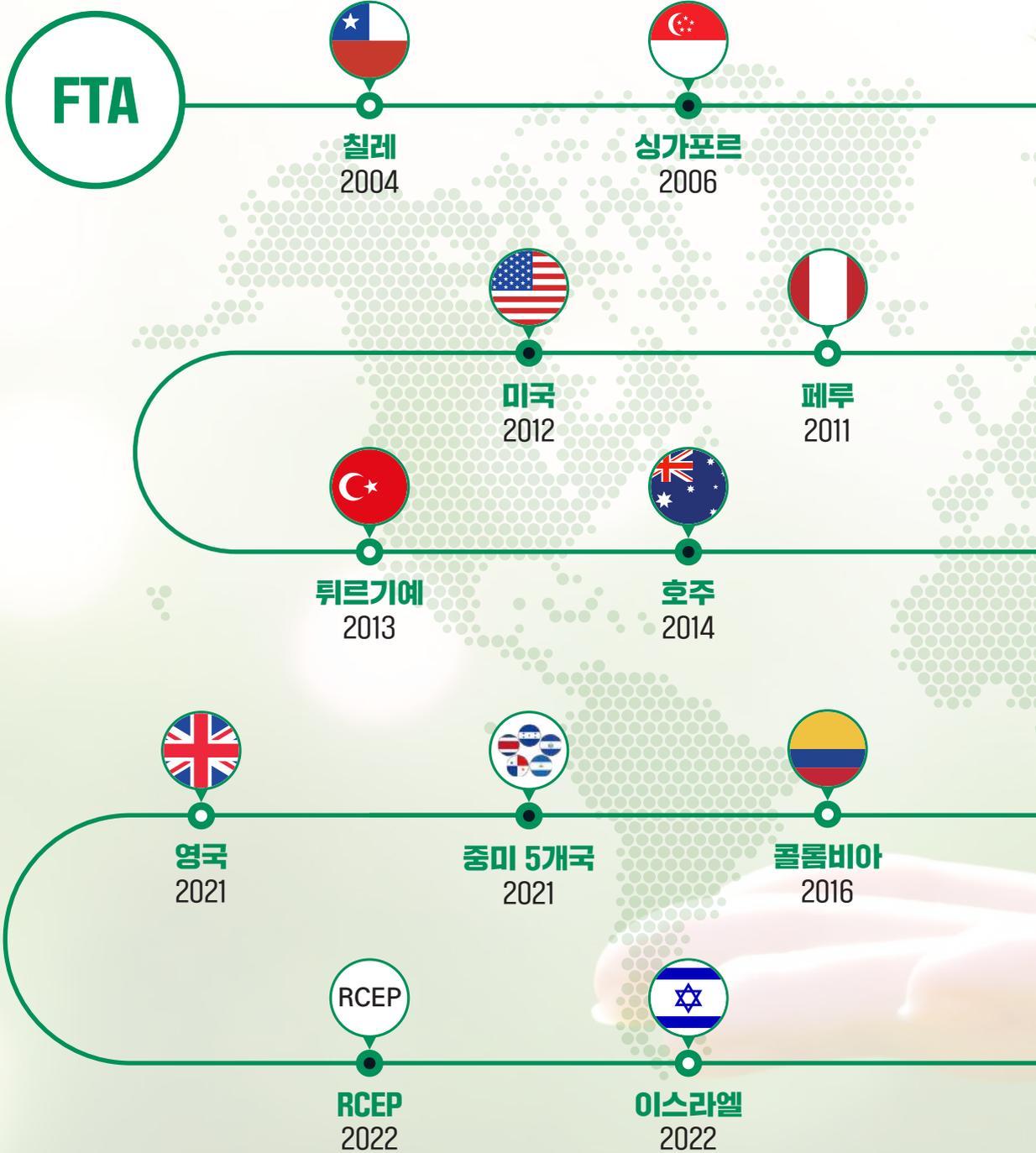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1. 광산물
2. 기계류
3. 농림수산물
4. 생활용품
5. 섬유류
6. 잡제품
7. 전자전기제품
8. 철강금속제품
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화학공업제품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2년과 2023년의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수출·수입)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2년 vs. 2023년 [상반기 증감 비율(%)]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TA 대상 수출입 (MTI 1단위, MTI 3단위)

2023년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EFTA
2006



아세안
2007



EU
2011



인도
2010



캐나다
2015



뉴질랜드
2015



베트남
2015



중국
2015



캄보디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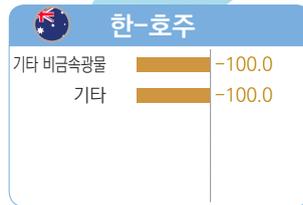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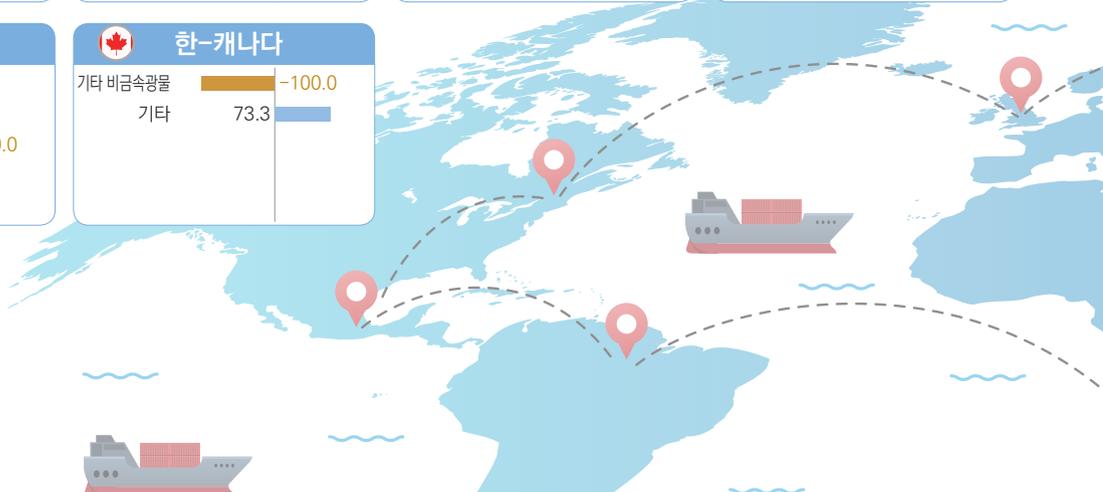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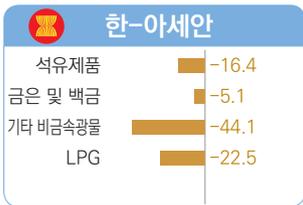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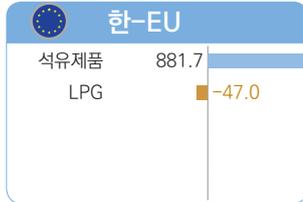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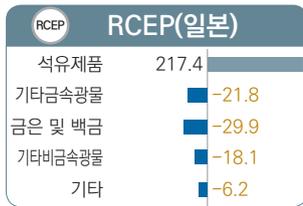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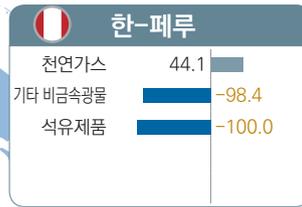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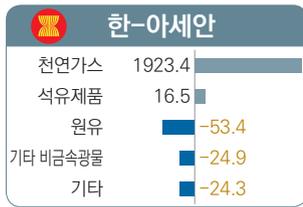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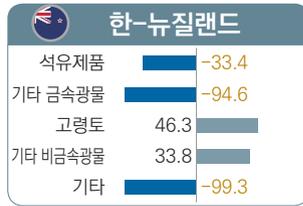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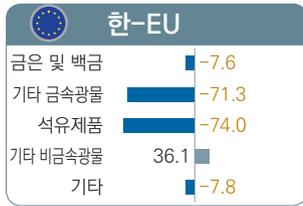
필리핀
2023.09(서명)

광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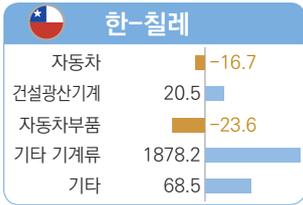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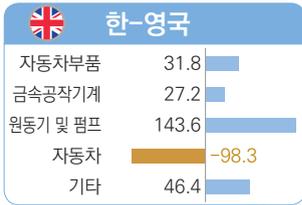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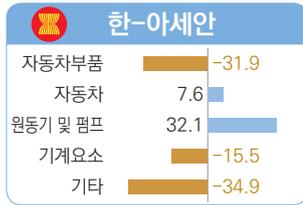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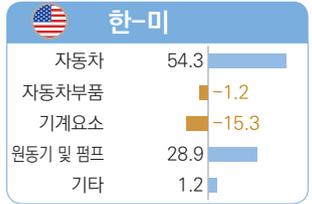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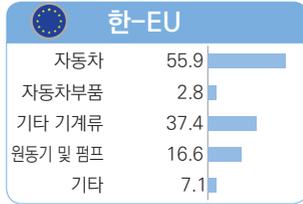


광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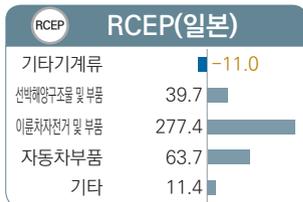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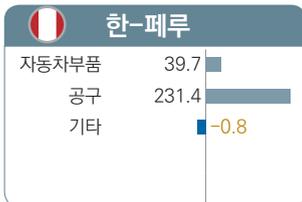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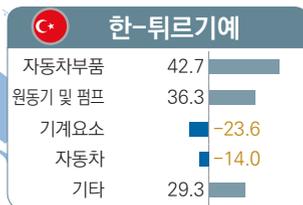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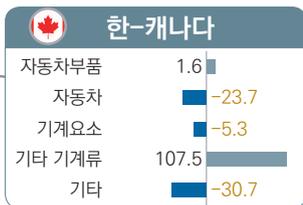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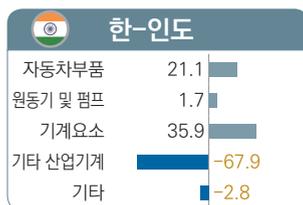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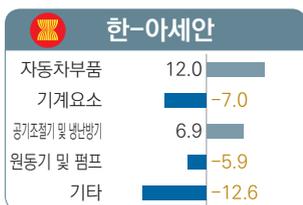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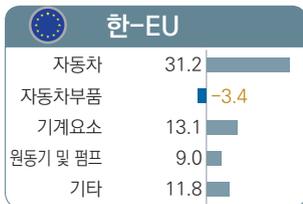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기계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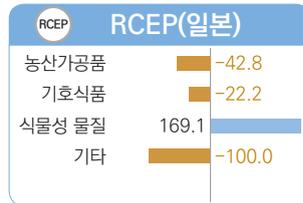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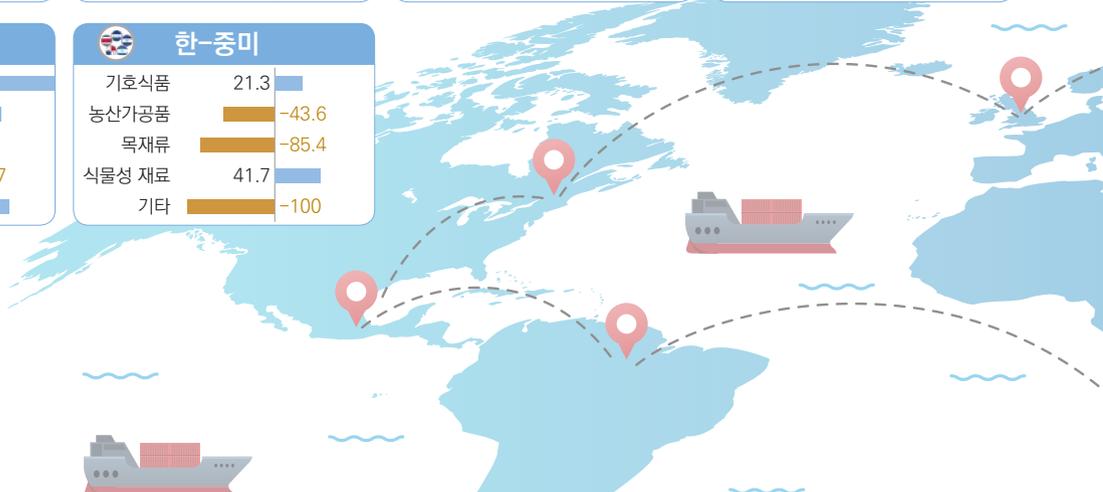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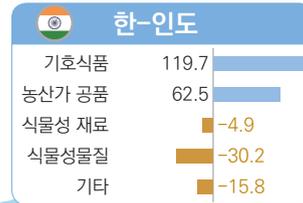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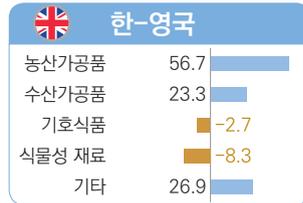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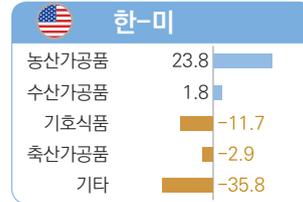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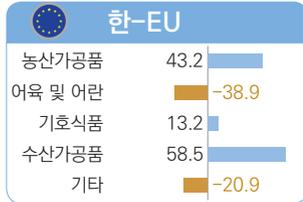




기계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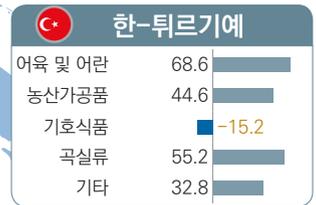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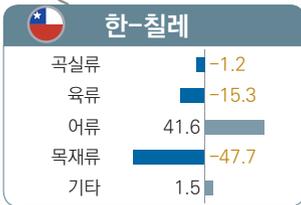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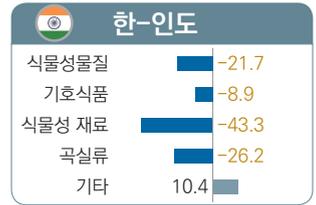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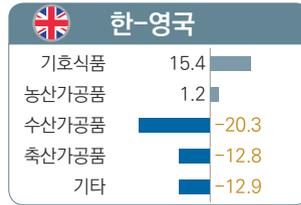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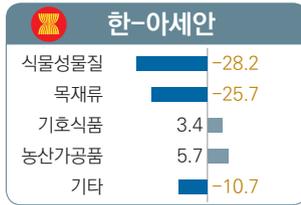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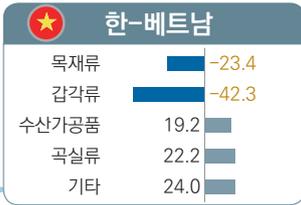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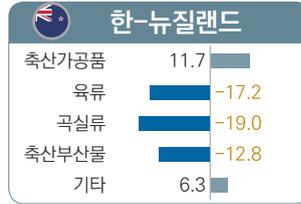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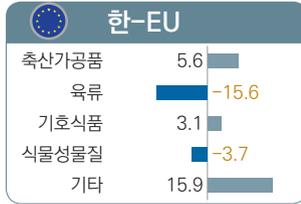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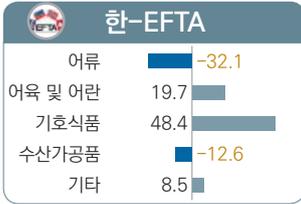


농림수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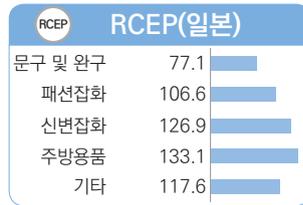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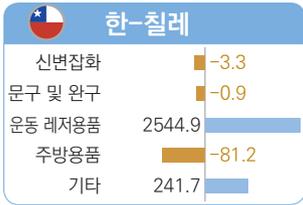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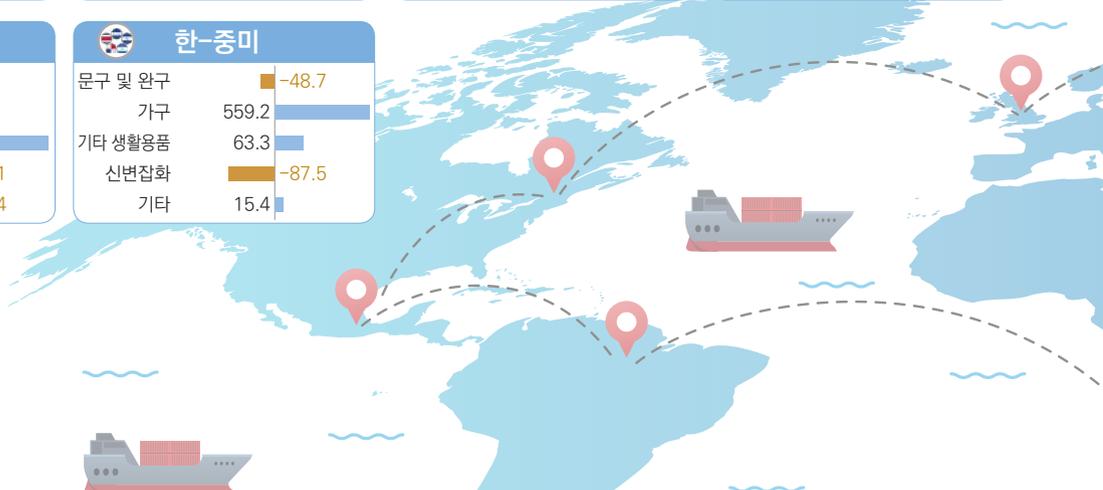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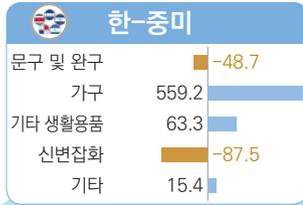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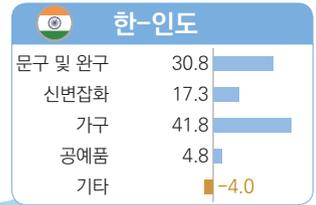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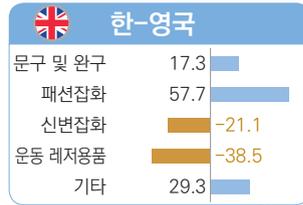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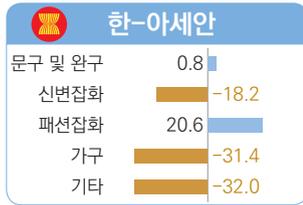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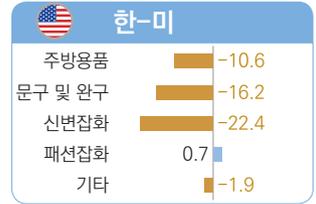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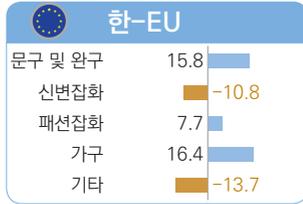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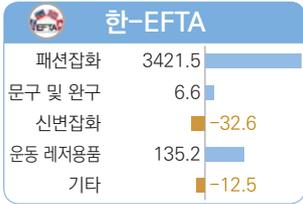


농림수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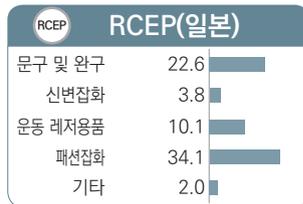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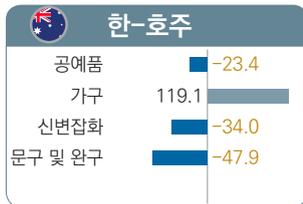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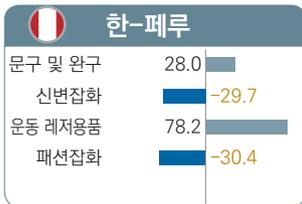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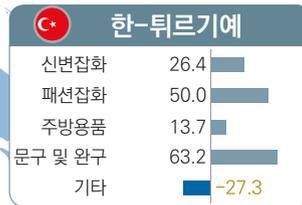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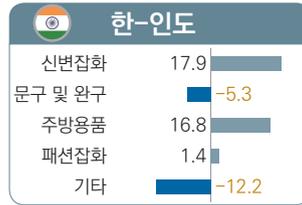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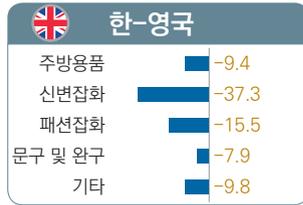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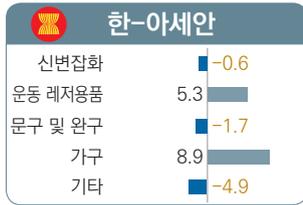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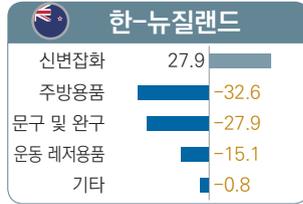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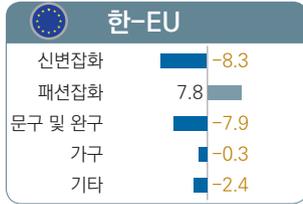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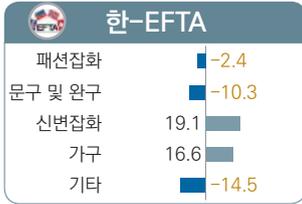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생활용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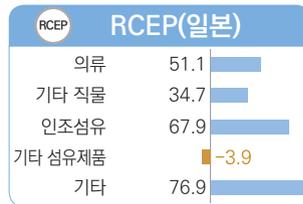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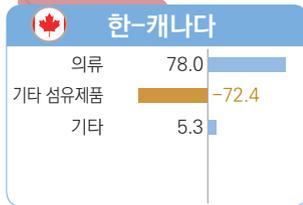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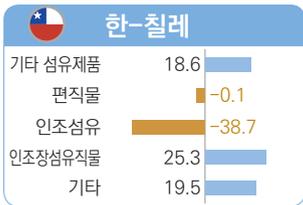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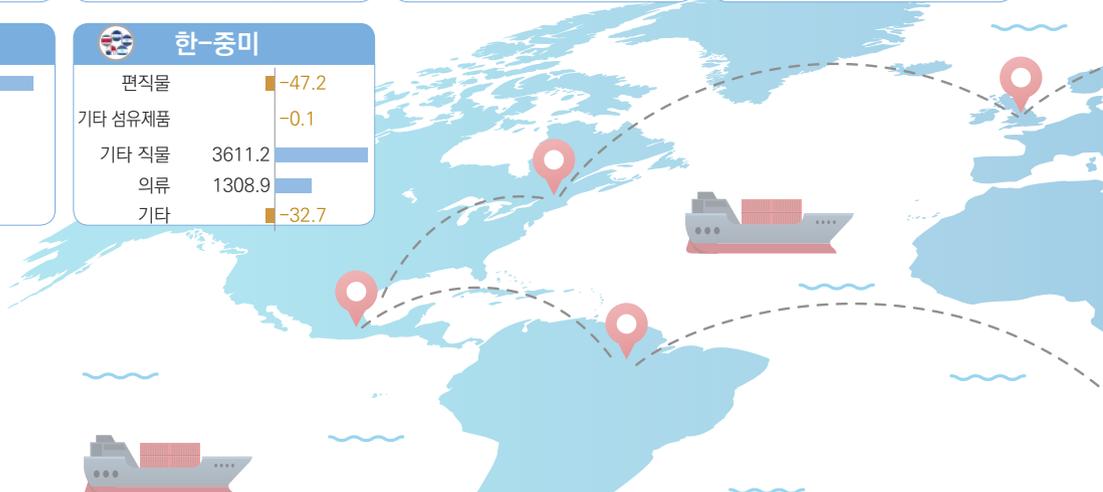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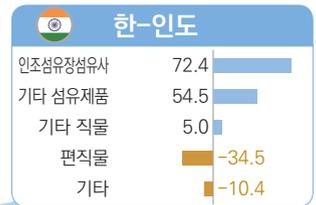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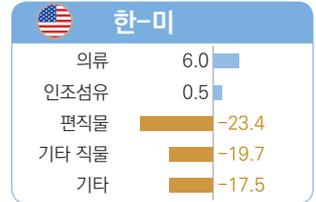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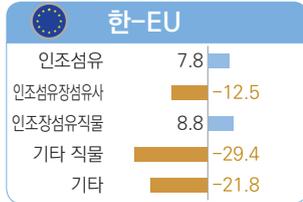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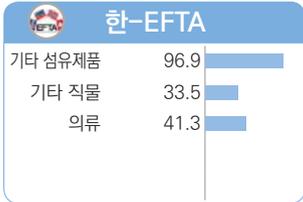


생활용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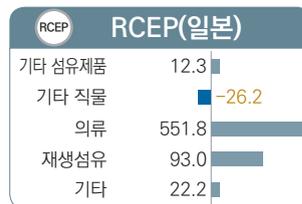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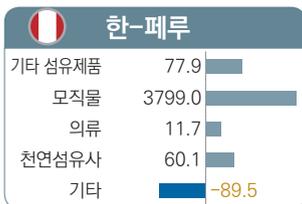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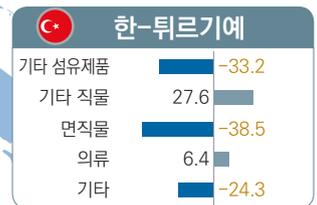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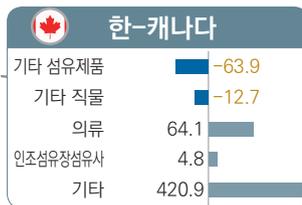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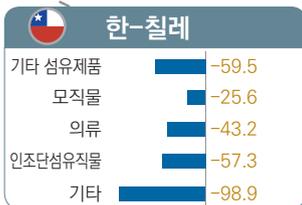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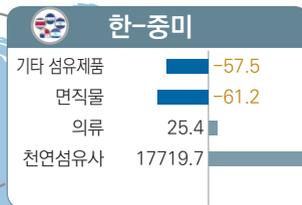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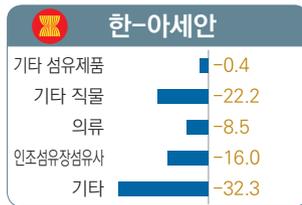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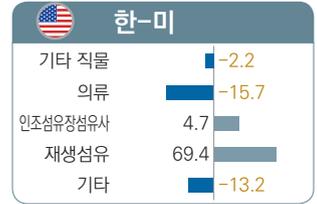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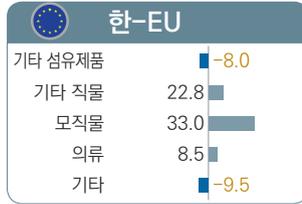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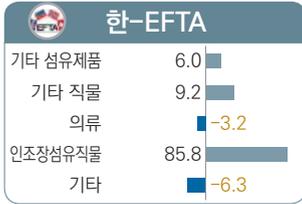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섬유류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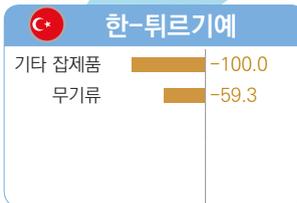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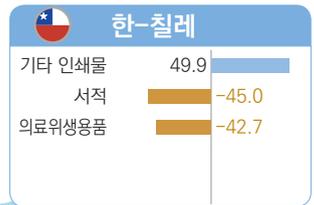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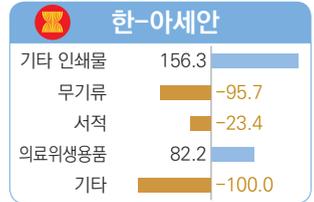




섬유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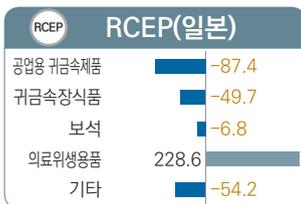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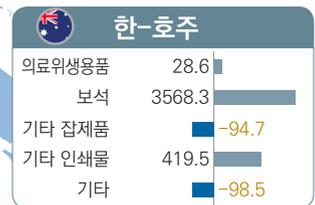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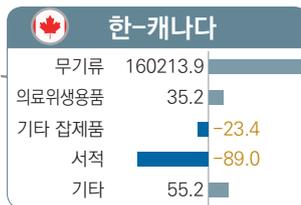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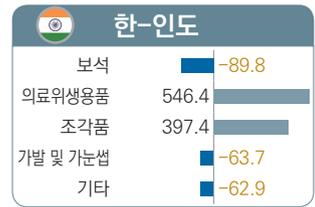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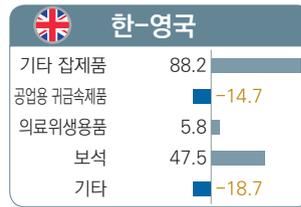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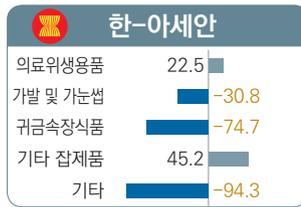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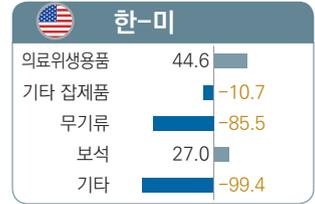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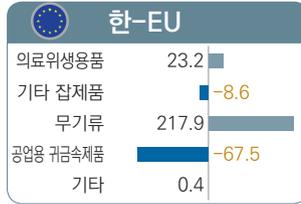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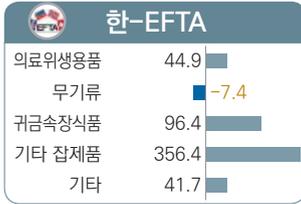


잡제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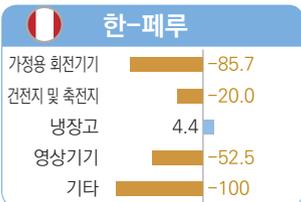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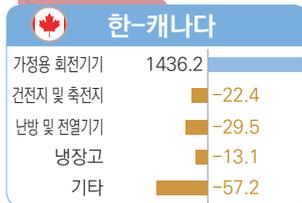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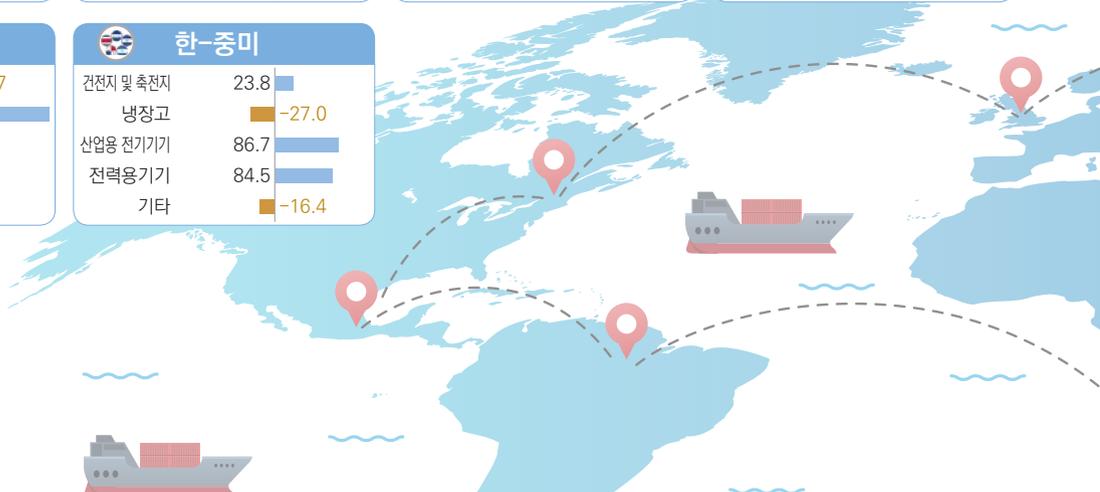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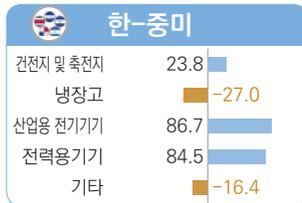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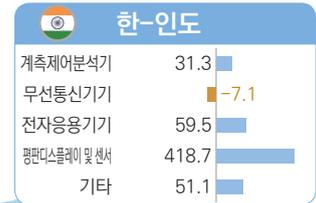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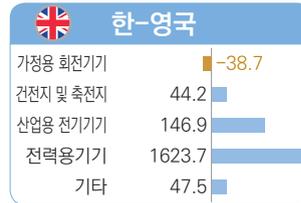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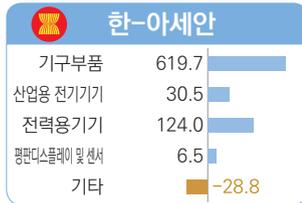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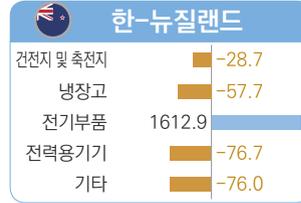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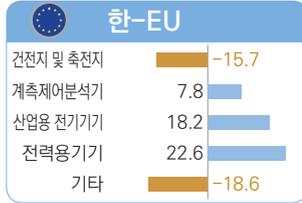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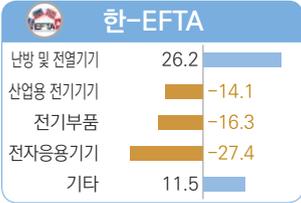


잡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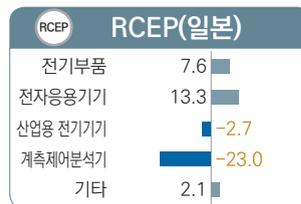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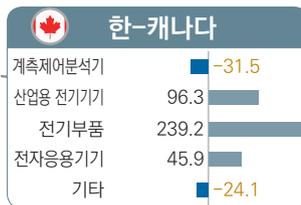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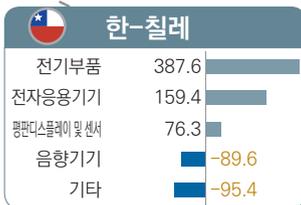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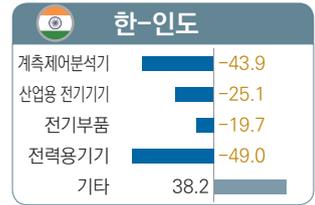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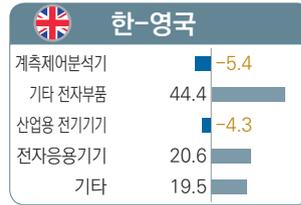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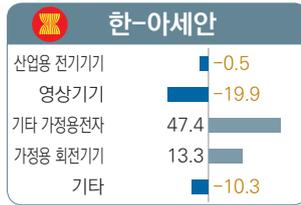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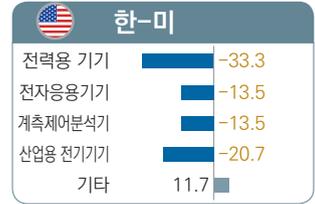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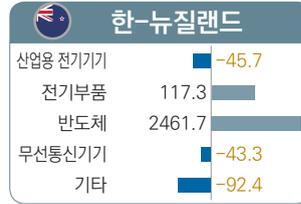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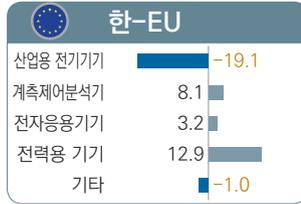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전자전기제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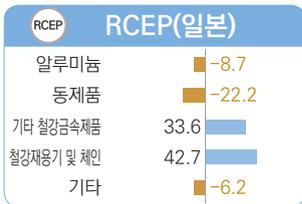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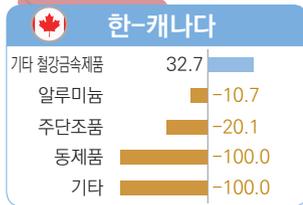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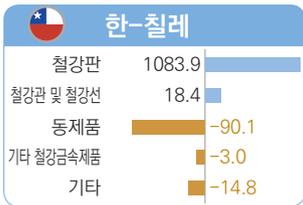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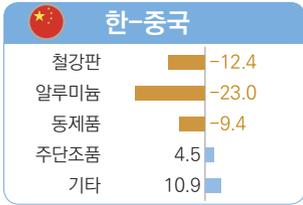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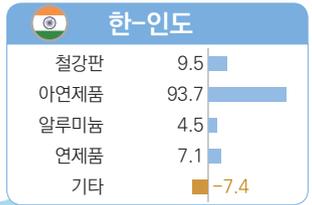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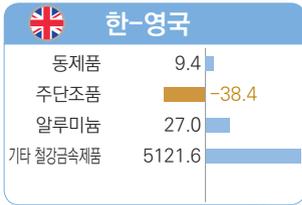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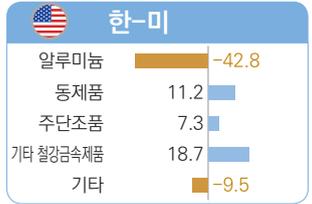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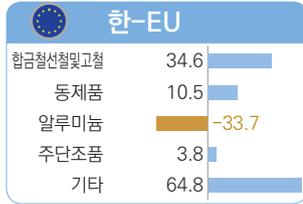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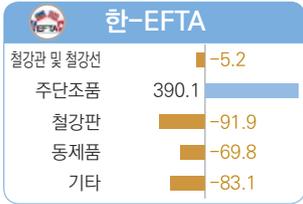


전자전기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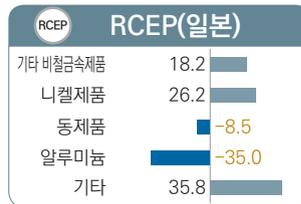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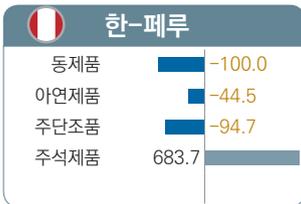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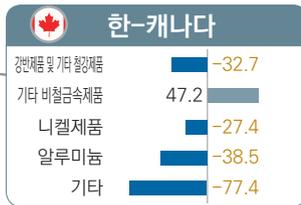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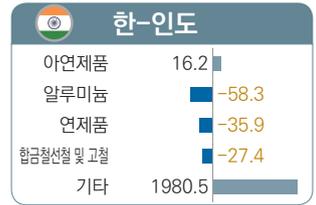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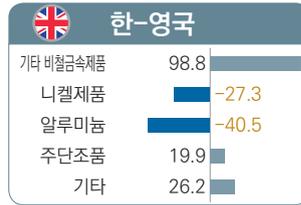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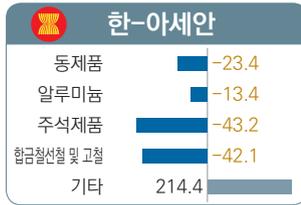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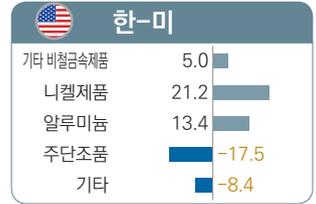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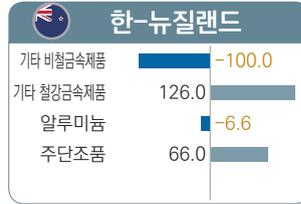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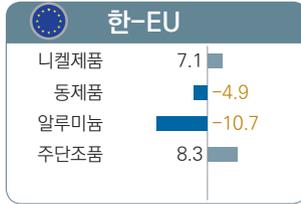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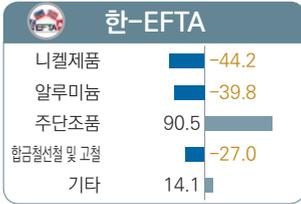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철강금속제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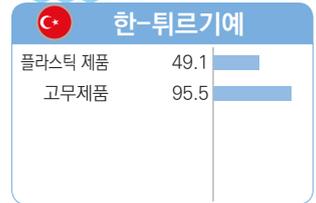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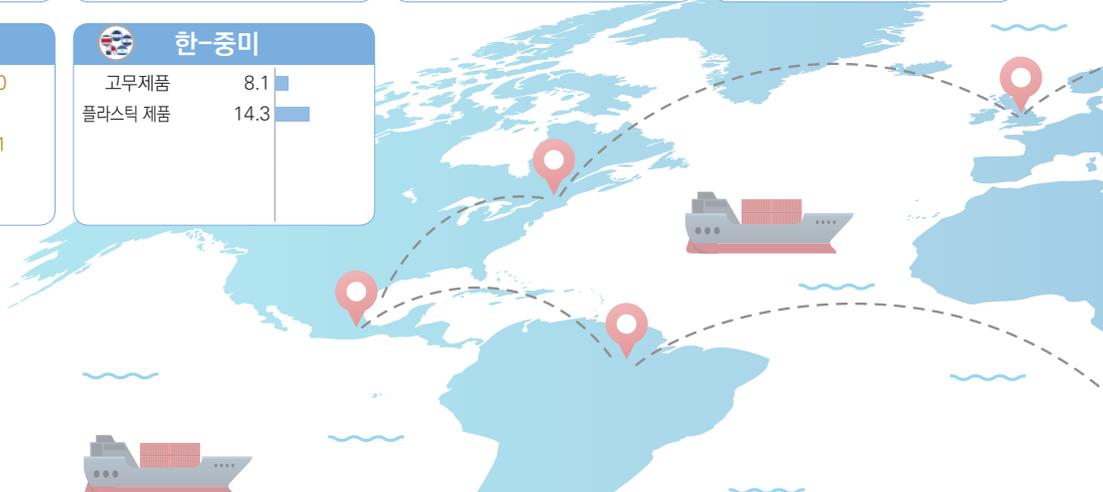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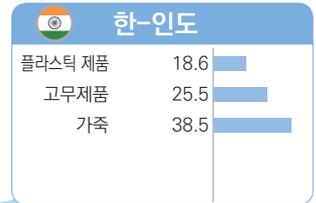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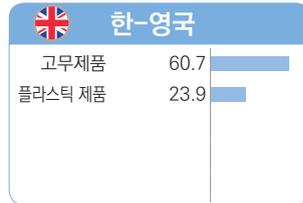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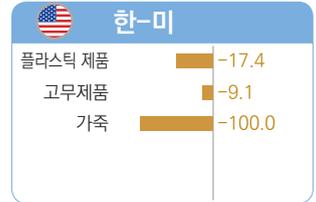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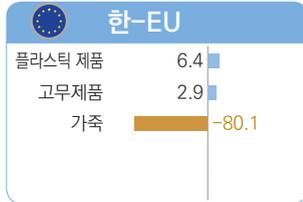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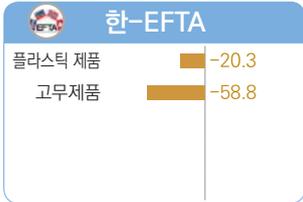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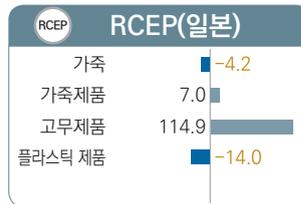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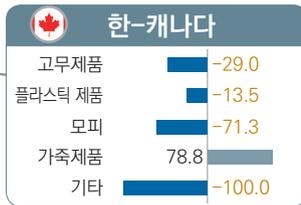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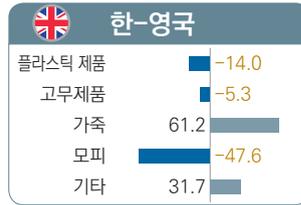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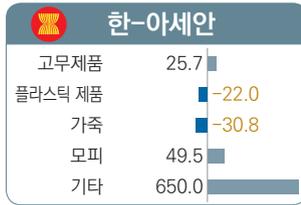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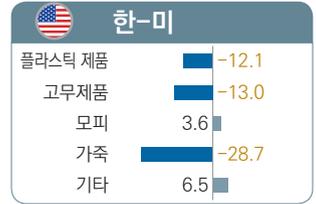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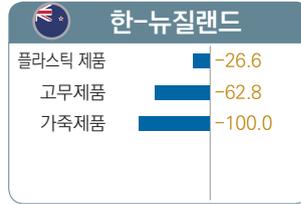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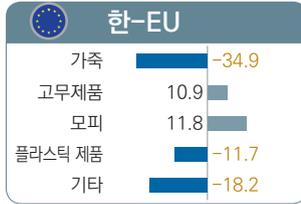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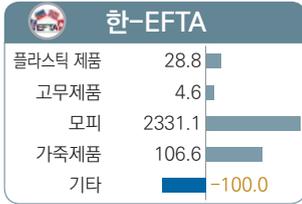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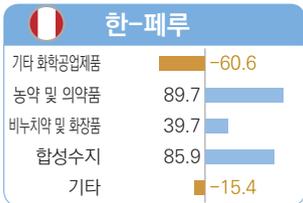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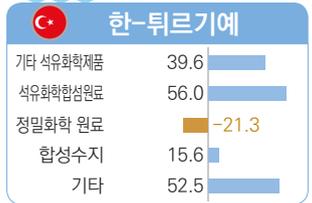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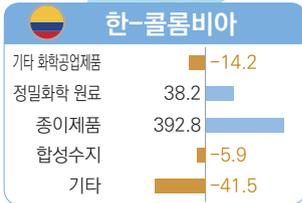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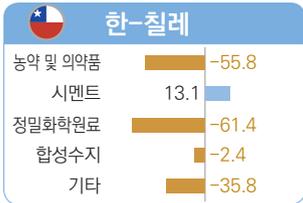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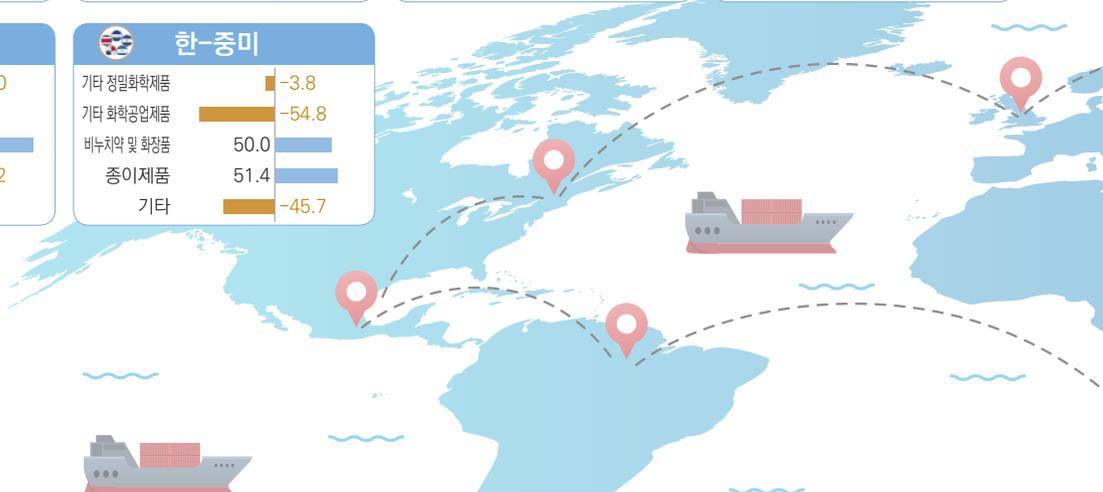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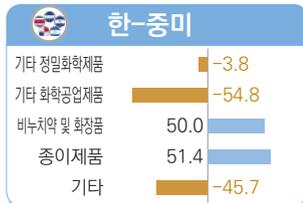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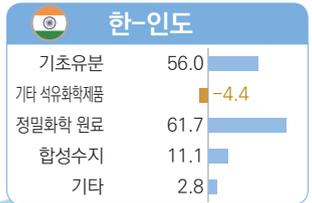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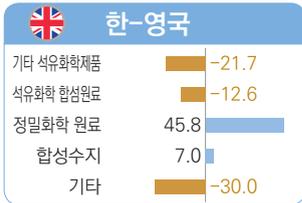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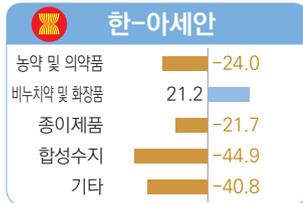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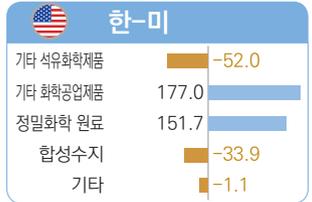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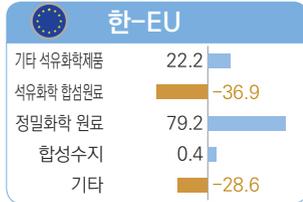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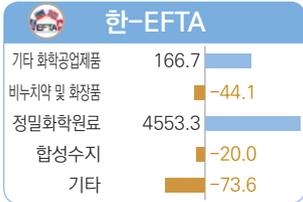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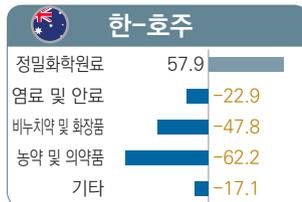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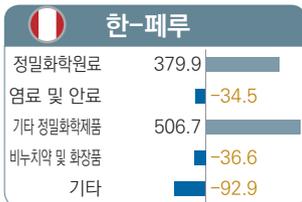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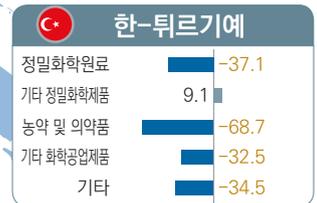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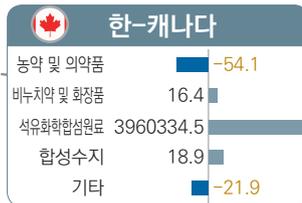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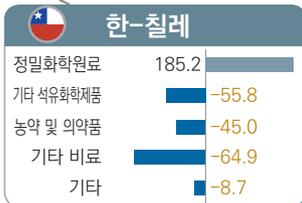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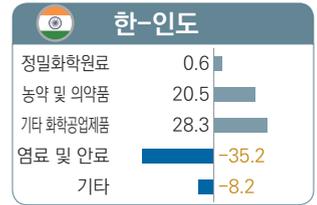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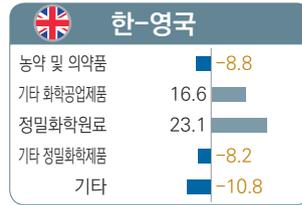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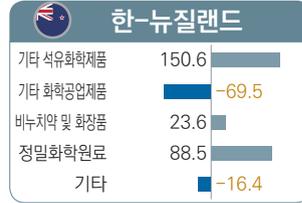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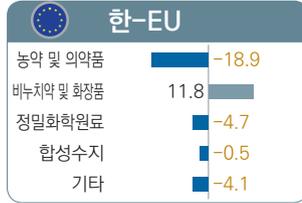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vs. 2023년 상반기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률

화학공업제품 수출



화학공업제품 수입



MEGA FTA 시대! FTA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2024년도

YES FTA 전문교육



교육특성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인정
-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 적용성 확보

교육상세

- [기간] 2024년 1월~12월
- [장소] 전국 주요 권역
- [온라인과정] YES FTA 교육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상시운영
- [비용] 전액무료

과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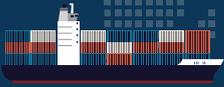
- 집합과정 (중소기업실무자)
- 비대면(ZOOM)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 온라인과정(중소기업실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인정
-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 적용성 확보

YES FTA 전문교육 홈페이지

(<https://www.ftaedu.or.kr/yesfta/>)
에서 지원사업의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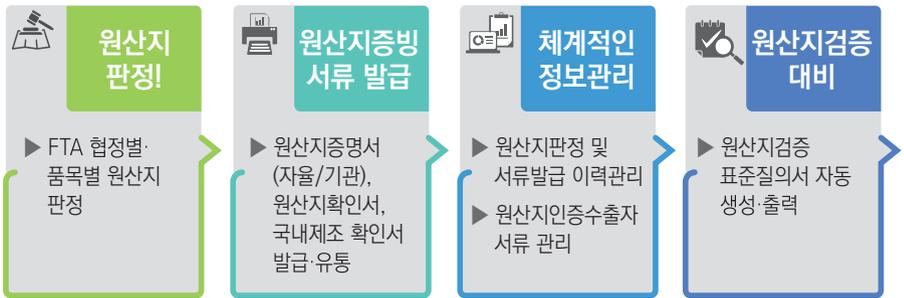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2. FTA-PASS 주요기능



3. FTA-PASS 활용 유형

기본형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관리기법(일종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산출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출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중견·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
간편형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 - 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 - 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
체험형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 - 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



FTA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November 2023 Vol. 04 (통권 44호)

(비매품)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한국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한국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3년 12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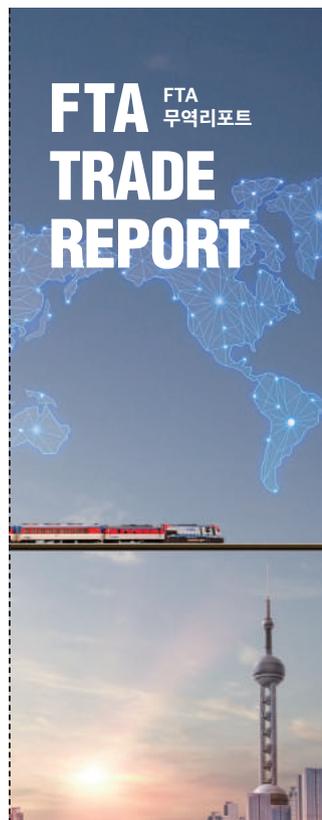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

